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12655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지 은

목 차

I . 개요	1
--------------	---

II . 주요 내용별 검토	5
----------------------	---

<소득세 일반 분야>

1. 임목 벌채·양도소득의 비과세 한도 상향 등(정부안)	5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특례 적용을 받는 교직원을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소득 대상으로 포함(이용우의원안, 정부안)	11
3.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 상향 등(한지아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18
4.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확대 등	27
가. 제도 개요	27
나.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강대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김태선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29
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시 직계비속의 소득요건 폐지(김영진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39
5.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과세관할 명확화(정부안)	42
6.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정부안)	44
7. 종신수령 방식의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 인하(김영진의원안, 정부안)	51
8.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신영대의원안, 김영진의원안, 정부안)	60
9.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규정 신설(정부안)	67
10.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매출전표 합산발행 허용범위 시행령으로 위임(정부안)	71

<양도소득세 분야>

- 11.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정부안) 78
- 1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배제 범위 확대(최은석의원안,정부안) 85
- 13. 국외주식 거래명세서 수집 근거 마련(정부안) 89

<금융소득세(이자·배당) 분야>

- 14.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을 조정(정부안) 92

<국제조세 분야>

- 15.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96
 - 가. 제도 개요 96
 - 나. 간접투자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식 변경(정부안, 김영진의원안) 105
 - 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 (정부안, 김영진의원안) 118
- 16.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정부안) 133
- 17.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 의무신설(정부안) 140

I. 개요

1. 정부안(의안번호 제12655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 (2) 제 안 일 : 2025. 9. 3.
- (3) 회 부 일 : 2025. 9. 4.

나. 제안이유

자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업 등의 출산·보육비 지원금 비과세 대상·한도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등 출산·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며,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일시 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추가 납부세액 분납을 허용하는 한편,

국외 주식 등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 및 자산간 과세형평을 위하여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다. 주요내용

가.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
(안 제12조제2호)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600만원에서 연 3천만원으로 상향함.

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안 제12조제3호 및 제5호)

1)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자가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2) 근로자 또는 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함.

다.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안 제57조의2제1항·제2항, 안 제129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연금계좌를 통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그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라.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안 제59조의4제3항)

1)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에 관계 없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마.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예외 대상 추가(안 제97조의 2제1항)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할 때, 양도 당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바. 국외 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확대(안 제118조의9부터 제118조의18까지)

국외 진출자가 출국 당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주식 등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함.

사.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안 제129조제1항제5호의2 및 제5호의 3)

1) 연금계좌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한 원

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함.

2)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하함.

아.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안 제144조의 2)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으로 추가 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해당 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함.

라.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 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나.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임목 벌채·양도소득의 비과세 한도 상향 등(정부안)

현 행	개정안
☐ 비과세 사업소득 (제12조제2호마목) ☐ 조립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 ☐ 조립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3,000만원 이하의 금액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정부안 2025. 9. 3. 제출 (의안번호 12655)

☐ 개정안은 조립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현행 연 600만원에서 연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¹⁾.

☐ 현행 법령에 따른 농업·어업·임업 소득의 비과세 범위는 다음과 같음.
 먼저 농업소득의 경우, 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²⁾되고, 수입금액 10억원 이하인 작물재배업 소득, 농가 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인 그 외의 농어가 부업소득은 비과세 대상임³⁾.

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농업(작물재배업 중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어업소득은 당초 어로 어업만을 주업으로 인정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 5천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양식어업은 농어가 부업소득으로 분류하여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하여 합계액 연 3천만원까지 비과세하였으나, 2023년 법 개정을 통해 양식어업을 어로 어업과 마찬가지로 주업으로 인정하고 비과세한도를 연 5천만원으로 확대하였음⁴⁾.

한편, 임업소득의 경우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한하여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까지 비과세하고 있음.

□ 개정안은 농업·어업에 비해 임업 관련 소득의 비과세 한도가 낮다는 문제의식 하에 임업 관련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 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

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통주의 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마.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이 경우 조림기간 및 세액의 계산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농어가부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가부업소득”이란 농·어민이 경영하는 축산·고공품(藁工品)제조·민박·음식물판매·특산물제조·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소득을 말한다.

1.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의 축산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호 외의 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연 3천만원 이하인 소득

제9조의4(비과세되는 작물재배업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하인 것을 말한다.

4)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의5(비과세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 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란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또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득을 말한다.

첫째, 농·어가 대비 가구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가에 대한 세 제지원을 확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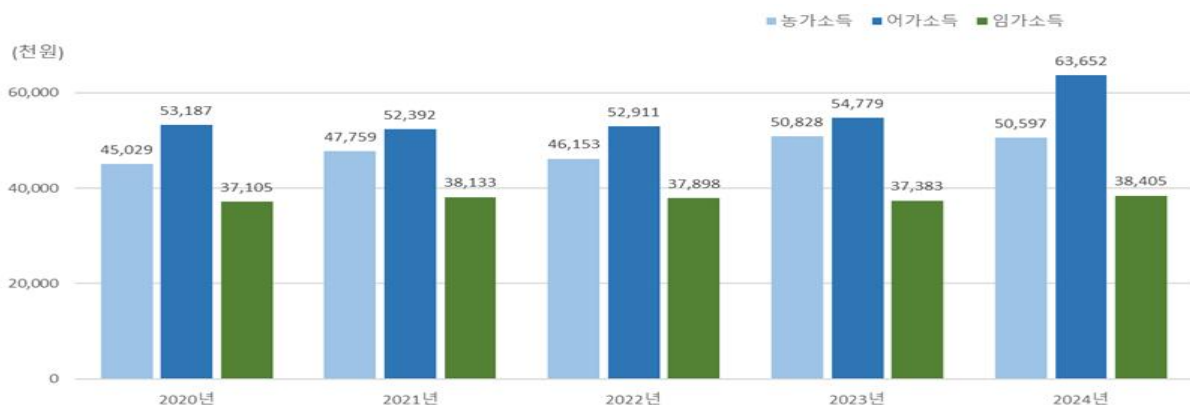
농·어가 가구소득 대비 임가소득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2024년 도에는 농가의 75.9%, 어가의 60.3%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최근 3년간 임가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 어⁵⁾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임가와 농·어가 가구소득 비교]

(단위: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농가소득	45,029	47,759	46,153	50,828	50,597
어가소득	53,187	52,392	52,911	54,779	63,652
임가소득	37,105	38,133	37,898	37,383	38,405
임가/농가 소득(%)	82.4	79.8	82.1	73.5	75.9
임가/어가 소득(%)	69.8	72.8	71.6	68.2	60.3
임가부채	28,912	27,294	27,618	29,141	30,240
임가 소득대비 부채비율(%)	77.92%	71.58%	72.87%	77.95%	78.7

자료: 국가데이터처(「농가·어가 경제조사」 및 「가계동향조사」), 산림청(「임가 경제조사」)



둘째,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 조세부담률 상승효과를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5) 2021년 71.58% → 2022년 72.87% → 2023년 77.95% → 2024년 78.7%

현행 임목 비과세 한도인 600만원은 1995년도에 설정된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⁶⁾가 1995년 51.99에서 2025년 116.52까지 상승했음에도 비과세 한도는 30년간 동결됨에 따라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과거 산림소득은 별도로 분류과세하되 연 50만원(1975년)까지 소득 금액에서 공제하다가 1989년 150만원, 1995년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였음. 이후 2007년 산림소득을 사업소득에 통합하는 과정에서 조립기간 5년 이상인 임목 벌채 등에 따른 소득의 경우 연 600만원까지 비과세하도록 변경한 뒤, 현재까지 비과세 한도가 변하지 않고 있음.

셋째, 2023년 양식어업의 비과세 한도를 연 5천만원까지 확대하는 등 타 업종의 세제지원 확대가 이루어졌음에도 임업 관련 비과세 소득 한도(600만원)는 농업·어업 소득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업종 간 형평성을 감안할 때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범위 확대 등이 필요한 측면이 있음.

6) 2020년도 소비자물가지수=100 기준

[주요 농업·어업·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현황]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비과세 한도
농업	작물 재배업	벼, 보리, 밀, 감자, 고구마	전액 비과세
		채소, 화훼, 과실, 음료용작물 시설작물 재배업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축산업	소 사육업	50마리 이하 : 전액 비과세 50마리 초과 : 소득금액 3천만원
		양돈업	700마리 이하 : 전액 비과세 700마리 초과 : 소득금액 3천만원
어업	어로어업 양식어업	-	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임업	임목 벌채·양도 소득	-	연 600만원 이하

□ 다만,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첫째, 가구당 조세부담률을 고려할 때 현재도 임가의 조세부담률이 비교적 낮은 편임. 따라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할 경우 임가의 조세부담률이 더 낮아져 조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가구 당 조세부담률]

(단위: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임 가	1.6	1.3	1.9	1.4	1.1
농 가	2.9	2.4	2.8	3.2	2.4
어 가	1.5	1.4	2.2	1.4	1.5

조세부담률 = 조세(국세+지방세) / 가구소득

자료: 국가데이터처(「농가·어가 경제조사」 및 「가계동향조사」), 산림청(「임가 경제조사」)

둘째, 특정 산업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확대는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임업 관련 비과세 한도는 과거 산림소득을 분류과세할 당시 설정된 소득공제 한도로서, 현재 산림소득이 종합소득(사업소득)에 통합된 만큼 별도의 비과세 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연혁을 고려하여 비과세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예산정책처 및 기획재정부는 정부제출안에 따를 경우, 2027년에서 2030년까지 4년간 총 36억원(연평균 9억 원)의 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정부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7~2030년)]

(단위: 억원)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정부안	△9	△9	△9	△9	△36	△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문 의 처

02)6788-5149

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특례 적용을 받는 교직원을 육아 휴직수당 비과세 소득대상으로 포함(이용우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비과세소득(제12조제3호)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사립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신 설>	☐ 사립학교 교직원에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소득에 포함(<u>안 제3호</u> <u>마목 신설</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이 정관 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 시행일: <u>2026. 1. 1.</u> ○ 적용례: <u>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u>

* 이용우의원안 2025. 8. 5. 발의(의안번호 11982), 정부안 2025. 9. 3. 제출 (의안번호 12655)

☐ 개정안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른 특례적용을 받는 교직원들이 각 학교경영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소득에 포함하려는 것임.

□ 현행 비과세소득 규정에 따르면, ①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②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③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사립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을 비과세소득으로 정하고 있음.

먼저,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등)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⁷⁾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⁸⁾,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⁹⁾, 별정우체국 직원의 경우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2조 및 제24조¹⁰⁾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수당을 법령에

7)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8)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육아휴직수당)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은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봉급액의 8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해당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한다.

9)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6(육아 등의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 법 제59조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사유로 휴직하는 교원의 신분 및 처우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6호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등 국립·공립 학교의 교원이 해당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한다.

10)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22조(휴직) ① (생 략)

② 국장 또는 직원이 제1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2호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국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 하거나, 여자직원(국장을 포함 한다)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되었을 때

제24조(휴직기간 중의 보수) ①·② (생 략)

③ 국장 또는 직원의 휴직기간 중 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예에 따른다.

근거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소득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70조의2¹¹⁾에서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보수 등을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립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육아휴직수당을 지급받음에 따라, 과거에는 ‘법령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4년 세법개정을 통해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괄호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받는 육아휴직 수당도 비과세되게 됨¹²⁾.

□ 그런데, 한국과학기술원 등 연구기관, 국립대학법인, 국립대학병원, 평생교육기관 등에 종사하는 교직원 중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교직원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의 특례규정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고 있음(이하 “특례적용 교직원”이라 함)¹³⁾.

11)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①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그의 사무와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기구를 두되, 그 설치·운영과 사무직원의 정원·임용·보수·복무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고,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한다.

12)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전직지원금,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별정우체국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을 포함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 적용기관 현황]

구분	적용기관	육아 휴직자
법률에 따라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제1항)	한국 과학기술원 등 10개 기관	103명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제2항)	서울자동차 고등학교 등 43개 기관	1명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직원(제3항)	사학연금공단	9명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조교 중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자(제5항)	인천대학교 등 6개 기관	76명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임상교수요원, 직원(제6항)	서울대병원 등 3개 기관	790명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임상교수요원, 직원(제7항)	부산대병원 등 16개 기관	1910명
(합계)		2,889명

자료: 기획재정부(2025.4.기준)

- 13)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적용범위의 특례) ① 법률에 따라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또는 군인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이하 이 조에서 “교직원”이라 한다)으로 보고, 연구기관은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이하 이 조에서 “학교경영기관”이라 한다)으로 본다.
- ②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로서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및 사무직원은 교직원으로 보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람 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법인은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 ③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의 직원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단의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무직원으로 보고, 공단은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1. 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의 범위
 2. 제2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의 범위
 3. 제3항에 따른 공단의 직원의 범위
- ⑤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조교 중 「공무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교원, 직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원, 직원 및 조교는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는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 ⑥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임상교수요원, 직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병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임상교수요원,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서울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 ⑦ 국가가 법인으로 설치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임상교수요원, 직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을 받아 운영하는 병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임상교수요원, 직원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직원으로,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은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학교경영기관으로 본다.

특례적용 교직원들은 ①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별정우체국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법령에 따라 육아휴직 수당을 받지 않고, ② 「고용보험법」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에 따라¹⁴⁾,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수령 대상도 아니며, ③ 사립학교 교원이 아니므로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육아휴직 수당의 적용을 받을 수도 없어, 법령상 육아휴직수당의 근거가 없음.

따라서 특례적용 교직원들은 각 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근거하여 육아휴직수당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육아휴직수당은 ①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수당’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본문의 적용을 받지 못함. 또한, 이들은 ②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아니므로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 괄호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도 않음. 결국 특례적용 교직원들이 각 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과세되고 있음.

14)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소득세법」상 육아휴직수당(급여) 비과세 구조]

대 상 자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규정 내용		관련 법령	현행 지급근거	비과세 여부
일 반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
공무원 등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u>관련 법령</u> 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공무원수당규정」 등	「공무원수당규정」 등	○
사학 연금 법 적용 대상	사립 학교 법상 교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u>관련 법령</u> 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사립학교법 시행령」	「사립학교법 시행령」	○
	사립 학교 법상 사무 직원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u>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u>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것		-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	○
	사학 연금 법 특례 적용 대상 자	현 행 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u>관련 법령</u> 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	×
		개 정 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특례 적용 교직원이 <u>정관 등에 따라</u>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	학교의 정관 또는 규칙	○

□ 개정안은 특례적용 교직원들에 대한 법률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으로,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육아휴직수당의 취지와 다른 근로자·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원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특례적용 대상자에 대한 육아휴직 수당을 비과세소득에 포함하여 법률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다만, 법령이 아닌 각 기관의 정관이나 규칙 등에 따라 학교가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인정하는 경우, 국세의 비과세 요건을 학교법인이 자의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예산정책처 및 기획재정부는 정부안에 따른 경우,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70억원(연평균 34억 원)의 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정부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정부안	△34	△34	△34	△34	△34	△170	△3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문 의 처

02)6788-5149

3. 자녀 보육 관련 급여 비과세 한도 상향 등(한지아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현행	한지아의원안, 추경호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 비과세소득(제12조제3호 머목)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 한도: 월 20만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사용자로부터 최대 2회에 걸쳐 지급받는 급여 전액 * 단,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사이에 지급받은 급여를 포함하고, 사용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지급받은 급여는 제외 ※'24년 세법개정으로 동 조항 신설	□ 자녀 보육 급여 비과세 한도 상향 ○ (현행과 같음) - 한도 : 자녀 1인당 월 20만원 ○ (현행과 같음) * 종교인소득도 동일하게 적용(서영교의원안, 정부안)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추경호의원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지아의원안) 2026. 1. 1.(서영교의원안, 정부안) ○ 경과규정: 이 법 시행 이후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부터 적용(한지아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추경호의원안, 정부안)

* 한지아의원안 2025. 5. 13. 발의(의안번호 10494), 추경호의원안 2025. 7. 31. 발의(의안번호 11894), 서영교의원안 2025. 9. 10. 발의(의안번호 12876),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5)

□ 4건의 개정안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또는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의 비과세한도를 현행 ‘월 20만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

□ 현행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은 출산장려 및 보육 지원을 위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있음.

동 제도는 2003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이후 20년간 변동 없이 10만원의 비과세 한도가 유지되어 오다가,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정책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첫째, 자녀 출산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저출생 문제 해소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¹⁵⁾이 2017년 1.05명 수준에서 2023년 0.72명까지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2024년 반등하였으나,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유일한 국가로¹⁶⁾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

15) 15~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16) OECD 주요국 합계출산율(2021년 기준)

한국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OECD평균
0.81	1.66	1.53	1.58	1.80	1.30	1.58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0.97	0.91	0.84	0.81	0.78	0.72	0.75

자료: 국가데이터처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를 상향하는 것은 최근 반등한 출산율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둘째, 자녀 양육비용에 대한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4년 영유아 가구¹⁷⁾의 평균 자녀양육비 지출은 월 111만 6천원으로 2024년 가구 소득 대비 17.8%, 가구 지출 대비 29.4%로 나타났음. 이는 2021년 월 97만 6천원 대비 14만 증가(14.3%)¹⁸⁾한 수치임. 따라서 자녀 양육비용 상승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의 확대가 필요한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비과세소득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자¹⁹⁾는 세 부담에 변화가 없는 반면 고소득자의 경우 비과세소득의 확

자료: OECD Family Database(<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17)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의미함.

18) 「2024년 전국보육실태조사」,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025.5. 참고로 동 조사는 3년 주기 조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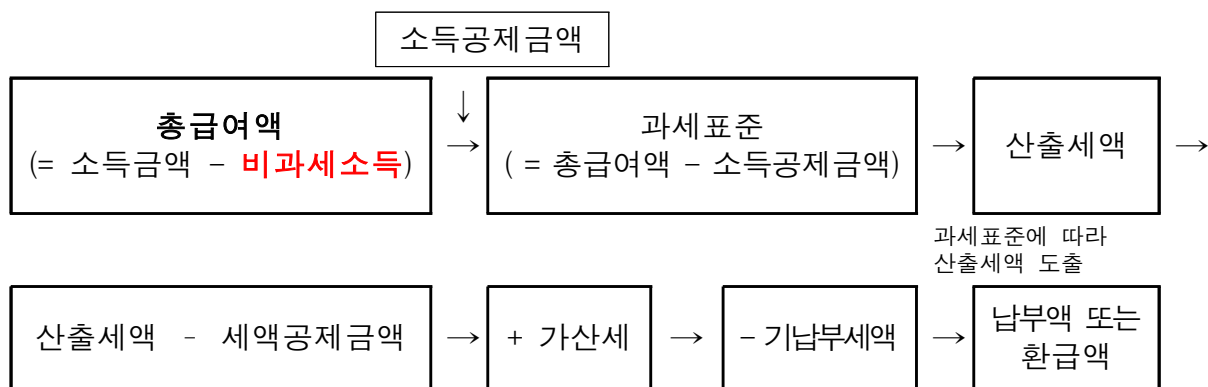
19) 근로소득세 면세자는 2023년 33.0%로 조사됨.

(2014) 48.1% (2015) 46.8% (2016) 43.6% (2017) 41.0% (2018) 38.9% (2019) 36.8% (2020) 37.2%

대에 따른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게 되어 소득세의 소득재분배기능이 약화될 수 있고, 비과세소득 확대로 인하여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세 세수 비중이 낮은 현 상황²⁰⁾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겠음.

둘째, 개정안과 같이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어 근로자의 비과세소득이 확대되는 경우, 동일한 연봉을 받더라도 총급여액이 줄어들게 되고 이에 따라 소득세의 산출세액이 줄어들게 됨.²¹⁾

[소득세액 계산 절차]



이로 인해 4대 보험료(국민연금²²⁾, 건강보험²³⁾, 고용보험, 산업재해

20) 2021년 기준 한국의 총 조세 대비 소득세수 비율은 28.6% 이며, GDP 대비 소득세수는 6.1% 인 반면, OECD 평균은 총 조세 대비 소득세수 비율은 32.4% 이며, GDP 대비 소득세수는 8.3%임. (자료: 기획재정부)

21)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② 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에 따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22)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조(소득의 범위) ① 사업장가입자나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의계속가입자(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임의계속가입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국민연금과 지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포함한다. 이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라 한다)의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같은 호 거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원양어업 선박이나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은 제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금액은 포함한다)을 뺀 소득

23)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 조 (소득월액)

보상보험²⁴⁾)의 감면 효과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 기획재정부
 부는 해당 개정에 따른 4대보험 재정손실 규모가 약 388억원~400
 억원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동 항목의 신설에 따른 세수
 효과 130억원을 상회하고 있으므로 심의과정에서 함께 고려될 필
 요가 있을 것임.

[4대보험 재정손실 규모 추산액]

(‘25년 월보수액 대비)	근로자 부담률	사업주 부담률	요율 계	감소액(억원)
국민연금	4.5%	4.5%	9.0%	△178
건강보험	3.545%	3.545%	7.09	△140
고용보험	0.9%	1.15 ~ 1.75%*	2.05 ~ 2.65%	△40~△52
산재보험	-	평균 1.47%**	평균 1.47%**	△29
계				△388~△400

자료: 기획재정부

셋째,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6세 이하 자녀의 보육비 비과세 한
 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2배 상향되었음. 그런데 최초로 비과
 세 한도(10만원)가 설정된 시기는 2003년으로, 해당 시점 대비 현
 재(2025년)의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1.6배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따
 라서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상향조정된 비과세 한도가 물가인상
 수준 등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또한, 현행법상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세제지원을

① 소득월액(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보수 외 소득월액을 말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소득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2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보수에서 제외되는 금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품”이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을 말한다.

통해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상 출산·양육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세목	유형	구체적 내용	근거								
소득세	비과세	· 출산·보육수당 관련 급여(6세 이하, 월 20만원) 비과세	소득법 §12								
		·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비과세									
	소득공제	· 20세 이하의 자녀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기본공제)	소득법 §50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소득법 §59-2								
		<table><tr><td>8세 이상 자녀 수</td><td>1명</td><td>2명</td><td>3명 ~</td></tr><tr><td>세액공제액</td><td>연 25만원</td><td>연 55만원</td><td>연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td></tr></table>		8세 이상 자녀 수	1명	2명	3명 ~	세액공제액	연 25만원	연 55만원	연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8세 이상 자녀 수		1명	2명	3명 ~					
세액공제액		연 25만원		연 55만원	연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table><tr><td>과세연도 출산·입양 자녀수</td><td>첫째</td><td>둘째</td><td>셋째</td></tr><tr><td>공제액</td><td>연 30만원</td><td>연 50만원</td><td>연 70만원</td></tr></table>	과세연도 출산·입양 자녀수	첫째	둘째	셋째	공제액	연 30만원	연 50만원	연 70만원			
과세연도 출산·입양 자녀수	첫째	둘째	셋째								
공제액	연 30만원	연 50만원	연 70만원								
·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법 §59-4②										
·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자녀장려세제	·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 7천만원 미만 및 가구원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의 부양자녀 1인당 50만원 ~ 100만원의 자녀장려금 지급 *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조특법 §100-28 ~ §100-31									
	· 유아용 기저귀·분유 면세	조특법 §106									
부가가치세	면세	· 산후조리원 면세	부가령 §35								

□ 또한,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예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만 1세 이

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50만원 또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고²⁵⁾, 만 8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원되며, 소득기준 충족 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등 다양한 재정지원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저출생 대응 재정지원 정책]²⁶⁾

유형	정책	구체적 내용	예산규모 (2025년)
보육·돌봄 정책	첫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24.1.1일 이후 출생 아동은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부터는 300만원 지급	3,591억 1,900만원
	아동수당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균등 기회보장을 위해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수당 지원	1조 9,587억 3,800만원
	부모급여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 보전	2조 1,351억 2,800만원
	기저귀·분유 지원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지원	44억 530만원
	보육료 지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유아 단계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적용하여 생애 출발선의 균등 교육 기회 제공	3조 1,020억 1,3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도모	3조 3,531억 2,400만원
	가정양육수당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전 24~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양육수당 지원	772억 9,200만원

25)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26)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 해외사례 연구」, 2025.1.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홍우형

- 참고로, 예산정책처는 한지아의원안에 따라 근로자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상향조정 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285.7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372.4억원(연평균 △274.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경호의원안에 의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142.9억원 등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229.5억원(연평균 △245.9억원) 감소할 것으로 각각 추계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6~2030년)]

(단위: 억 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한지아의원안	△285.7	△279.8	△274.3	△269.3	△263.2	△1,372.4	△274.5
추경호의원안	△142.9	△279.8	△274.3	△269.3	△263.2	△1,229.5	△245.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한편, 기획재정부는 정부안에 따를 경우,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650억원(연평균 130억 원)의 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고, 국회예산정책처는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1,372억원(연평균 274억 원)의 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정부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예산정책처 추계 (A)	△286	△280	△274	△269	△263	△1,372	△274
기획재정부 추계 (B)	△130	△130	△130	△130	△130	△650	△130
차이 (A-B)	△156	△150	△144	△139	△133	△722	△14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문 의 처

02)6788-5149

4.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확대 등

가. 개요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는 국민들에게 고등교육에 대한 학력취득 기회를 제공하며 평생학습을 통한 학습사회를 구현하고자 거주자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각종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임.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하여 유치원, 초·중·고 및 대학교 등 각급 학교, 평생교육시설, 국외교육기관 등에 지급한 교육비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동 제도는 지난 1977년 도입된 이래 지속적으로 세제혜택이 확대되어 왔음. 2008년 세법개정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대학생은 연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취학 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은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하였고,

2013년 세법개정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과도한 세감면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공제율 15%)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2016년 세법개정으로 거주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및 연 30만원 한도의 현장체험학습비(시행령 개정)

를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였으며,

2022년 세법개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였음.

나.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강대식 의원안, 윤영석의원안, 김태선의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강대식의의원안, 윤영석의원안, 김태선의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제59조의4제3항) ○ 공제대상: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다음의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 - 유치원, 초·중·고·대학교 등 각급 학교 등에 지급한 교육비,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등 - <신 설>	☐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확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초등학생의 예능학원(음악, 미술 또는 무용)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u>(윤영석의원안) - <u>초등학생의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u>(강대식의의원안) - <u>초등학생의 예능학원(음악, 미술 또는 무용)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u>(김태선의의원안, 서영교의원안) - <u>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u>(정부안) ○ 시행일 : 2026.1.1.(김태선의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공포 후 3개월 (윤영석의원안) 공포 후 6개월 (강대식의의원안) ○ 경과규정: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강대식의의원안, 윤영석의원안, 김태선의의원안)

* 강대식의의원안 2025. 2. 14. 발의(의안번호 8178), 윤영석의원안 2025. 2. 18. 발의(의안번호 8255), 김태선의의원안 2025. 7. 31. 발의(의안번호 11893), 서영교의원안 2025. 9. 10. 발의(의안번호 12876), 정부안 2025. 9. 3. 제출 (의안번호 12655)

☐ 5건의 개정안은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현행법은 미취학 아동에 대하여만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강대식의원안은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전체 학원과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하여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윤영석의원안은 초등학생의 예능학원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 김태선의원안 및 서영교의원안은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예능학원과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 정부안은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의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 각각 특별세액공제를 적용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해 심화되고 있는 저출생 문제의 해소에 기여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음.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²⁷⁾이 2016년 1.17명 수준에서 2018년 0.98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바, 저출생 문제 완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임.

[합계출산율 추이]

(단위: 명)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0.97	0.91	0.84	0.81	0.78	0.72	0.75

자료: 국가데이터처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비용은 2021년

27) 15세~49세 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72.1만원²⁸⁾에서 2024년 78.9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이 중 교육비 비중은 2021년 44.0%, 2024년 45.6%로 기타 항목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교육비의 부담이 저출생 문제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자녀 1인당 월평균 자녀 양육 비용 지출액]

(단위: 만원, %)

구 분	어린이집 유치원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돌봄비용	기타비용	합계
2021년 (비중)	2.8 (3.9)	5.7 (7.9)	26.0 (36.1)	2.7 (3.7)	34.9 (48.4)	72.1 (100.0)
2024년 (비중)	2.1 (2.6)	5.9 (7.5)	30.1 (38.1)	2.0 (2.5)	38.8 (49.2)	78.9 (100.0)

*가구의 월평균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을 의미함
 *기타비용: 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기타 육아용품비, 용돈, 의료, 교통, 통신 등
 자료: 「2021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보건사회연구원
 「2024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보건사회연구원

둘째,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에 대한 부담완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법 취지가 인정됨.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교육인 학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참여율이 50.3%, 초등돌봄교실 참여율이 11.5%에 불과²⁹⁾한 상황에서, 학교 이후의 자녀돌봄을 위해 부득이하게 초등학생 자녀를 체육시설에 보내는 맞벌이 부부들이 발생하고 있음. 특히 전체 학생의 예체능 및 취미, 교양을 위한 월평균 사교육비는 11만 3천원으로 전년대비 7.7% 상승하여,³⁰⁾ 지원의 필요성 또한 커지고 있는 측면이

28) 분석의 편의상 2자녀 가구의 월평균 자녀 1인당 양육비용을 기준으로 비교함.
 29) 「2024년 늘봄학교 추진방안」, 교육부 보도자료, 2024. 2. 5.
 30)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국가데이터처, 2025.3.

있음.

개정안과 같이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맞벌이 부부 가정의 실질적인 돌봄비용을 지원하게 되므로 해당 맞벌이 부부의 돌봄 부담 및 관련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임.

[맞벌이 가구 비중]

(단위: %)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맞벌이가구 비중	45.0	45.9	46.1	48.2	48.0

자료: 기획재정부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첫째, 저출산의 원인인 경제적 부담 중 사교육비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개정안의 교육비에 대한 세제지원이 오히려 사교육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초·중고등학생의 월평균 자녀 양육 비용 지출액 현황을 살펴보면, 사교육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하더라도 일반 가정이 공교육에 대한 지출을 증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중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위한 교육비 중 사교육비의 비중이 공

교육비의 비중보다 크고 2023년 대비 2024년 사교육비 총액, 사교육 참여율 및 사교육 참여시간 등이 모두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할 경우 공교육보다는 사교육의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2023년 및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비교]

구 분	사교육비 총액		사교육 참여율		사교육 주당 참여시간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2023년	2024년
전 체	27.1조원	29.2조원	78.5%	80.0%	7.3시간	7.6시간
초등학교	12.4조원	13.2조원	86.0%	87.7%	7.5시간	7.8시간
중학교	7.2조원	7.8조원	75.4%	78.0%	7.4시간	7.8시간
고등학교	7.5조원	8.1조원	66.4%	67.3%	6.7시간	6.9시간

자료: 「2024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2025. 3.

둘째, 교육비 세제지원 확대의 혜택이 역진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자녀 간 교육 격차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소득자일수록 교육비 등 지출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지출액의 일정비율로 이루어지는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의 혜택은 고소득자에게 더 크게 귀착될 것이고, 2023년 귀속소득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의 33%³¹⁾에 이르는 면세점 이하의 저소득 근로소득자는 개정안에 따른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의 적용이 되지 않음.

31) 2023년 귀속소득 기준으로 근로소득 면세자는 688만명(33%)임.

[가구소득별 자녀 1인당 월평균 자녀 양육 비용 지출액]

(단위: 만원, %)

구 분	어린이집 유치원비	공교육비	사교육비	돌봄비용	기타비용	합계
2024년 (비중)	2.1 (2.6)	5.9 (7.5)	30.1 (38.1)	2.0 (2.5)	38.8 (49.2)	78.9 (100.0)
~60%	1.0	2.4	16.7	0.4	28.4	48.9
60%~80%	1.3	3.6	18.0	0.3	31.8	55.0
80%~100%	2.3	3.1	21.1	0.2	34.1	60.7
100%~120%	1.9	4.4	25.1	0.2	36.0	67.9
120%~140%	2.4	6.0	27.8	0.9	37.1	74.2
140%~160%	2.1	5.3	32.0	1.3	38.9	79.7
160%~	2.4	8.8	41.0	4.9	45.4	102.5

*가구소득은 2024년 2/4분기 가구(1인 이상)당 월평균 소득(약 469만원)이 100%에 해당

*기타비용: 의복, 장난감, 분유, 기저귀, 기타 육아용품비, 용돈, 의료, 교통, 통신 등

자료: 「2024년도 가족과 출산조사」, 보건사회연구원

셋째,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대규모 세수감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강대식의원안, 윤영석의원안 및 김태선의의원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5년간 최소 1조 5,876억원에서 최대 3조 7,770억원의 재정수입 감소가 예상된다는 추계결과를 제시함.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2027년~2030년)]

(단위 : 억 원)

구 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누적	연평균
강대식 의원안	△3,680	△3,412	△3,141	△2,916	△2,727	△15,876	△3,175
윤영석 의원안	△3,776	△3,567	△3,328	△3,086	△2,880	△16,637	△3,327
김태선 의원안	△8,541	△8,022	△7,504	△7,048	△6,655	△37,770	△7,55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또한 정부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4년간 3,252억원(연 평균 813억원), 국회예산정책처는 4년간 2,979억원(연 평균 745억원)의 조세감면이 이루어질 것으로 각각 추계함.

[정부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2026년~2030년)]

(단위 : 억 원)

구 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누적	연평균
국회예산 정책처(A)	△838	△775	△710	△656	△2,979	△745
기획재정 부(B)	△813	△813	△813	△813	△3,252	△813
차이 (A-B)	△25	38	103	157	273	68

자료: 기획재정부

□ 참고로, 현행법상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세제지원을 통해 출산·양육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현행법상 출산·양육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세목	유형	구체적 내용	근거								
소득세	비과세	· 출산·보육수당 관련 급여(6세 이하, 월 20만원) 비과세	소득법 §12								
		·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 비과세									
	소득공제	· 20세 이하의 자녀 1인당 150만원 소득공제(기본공제)	소득법 §50								
	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소득법 §59-2								
		<table><tr><td>8세 이상 자녀 수</td><td>1명</td><td>2명</td><td>3명 ~</td></tr><tr><td>세액공제액</td><td>연 25만원</td><td>연 55만원</td><td>연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td></tr></table>		8세 이상 자녀 수	1명	2명	3명 ~	세액공제액	연 25만원	연 55만원	연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8세 이상 자녀 수		1명	2명	3명 ~					
세액공제액		연 25만원		연 55만원	연 55만원 + 2명 초과 1명당 40만원						
<table><tr><td>과세연도 출산·입양 자녀수</td><td>첫째</td><td>둘째</td><td>셋째</td></tr><tr><td>공제액</td><td>연 30만원</td><td>연 50만원</td><td>연 70만원</td></tr></table>	과세연도 출산·입양 자녀수	첫째	둘째	셋째	공제액	연 30만원	연 50만원	연 70만원			
과세연도 출산·입양 자녀수	첫째	둘째	셋째								
공제액	연 30만원	연 50만원	연 70만원								
의료비 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법 §59-4②									
	· 기본공제대상자 관련 의료비 중 총급여액 3% 초과액 (연 700만원 한도, 산후조리원 비용(200만원 한도) 포함, 공제율 15%)										
교육비 세액공제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관련의료비(공제율 20%)	소득법 §59-4③									
	· 난임시술 관련 지출비용(공제율 30%)										
자녀장려세제	· 교육비 세액공제(공제율 15%)	소득법 §59-4③									
	·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부가가치세	면세	· 고등학생 이하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소득법 §59-4③								
부가가치세	면세	·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액 7천만원 미만 및 가구원 재산 2억 4천만원 미만인 가구의 부양자녀 1인당 50만원 ~ 100만원의 자녀장려금 지급	조특법 §100-28 ~ §100-31								
		· *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불가									
부가가치세	면세	· 유아용 기저귀·분유 면세	조특법 §106								
		· 산후조리원 면세		부가령 §35							

□ 또한,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 및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예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만 1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에게 월 50만원 또는 10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있고³²⁾, 만 8세 이하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

당이 지원되며, 소득기준 충족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등 다양한 재정지원 제도가 운영 중에 있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저출생 대응 재정지원 정책]³³⁾

유형	정책	구체적 내용	예산규모 (2025년)
보육·돌봄 정책	첫만남이용권 (출산장려금)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24.1.1일 이후 출생 아동은 첫째 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부터는 300만원 지급	3,591억 1,900만원
	아동수당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균등 기회보장을 위해 만 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수당 지원	1조 9,587억 3,800만원
	부모급여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 보전	2조 1,351억 2,800만원
	기저귀·분유 지원	저소득층 영아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지원	434억 5300만원
	보육료 지원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유아 단계에서부터 양질의 교육을 적용하여 생애 출발선의 균등 교육 기회 제공	3조 1,020억원 1,300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 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 도모	3조 3,531억 2,400만원
	가정양육수당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취학전 24~86개월 미만 영유아에게 양육수당 지원	772억 9,200만원

32) 만 0세: 월 100만원, 만 1세: 월 50만원

33)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정책 해외사례 연구」, 2025.1.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홍우형

문 의 처
02)6788-5149

다.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시 직계비속의 소득요건 폐지
(김영진의원안, 서영교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 정 안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안 제59조의4제3항) ☐ (적용범위)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 - 장애인 * 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18세 미만 한정 - 직계비속등 * <u>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총급여 500만원) 이하</u> ☐ (공제율) 15% ☐ (공제 한도) - 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 대학생 : 900만원 -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생 : 300만원	☐ 직계비속 소득요건 삭제 - (현행과 같음) - <u>소득요건 폐지</u>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u>2026년 1월 1일</u> ☐ 적용례: <u>이 법 시행 이후 지급한 교육비부터 적용</u>

* 김영진의원안 2025. 8. 8. 발의(의안번호 12063), 서영교의원안 2025. 9. 10. 발의(의안번호 12876), 정부안 2025. 9. 3. 제출 (의안번호 12655)

☐ 개정안은 교육비 특별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 기본공제대상자 중 직계비속의 소득요건을 폐지하여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부모의 재정적 지원이 충분하지 못해,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학비·용돈·생활비 등을 일부 충당하는 대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재정적 여유로 인해 이러한 생활이 불필요한 가정들에 비해 지원 필요성이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교육비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것임.

또한 교육비 역시 소득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의료비와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필수적 지출에 해당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직계비속의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지원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때문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교육비 세제지원 확대의 혜택이 역진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의 혜택은 고소득자에게 더 크게 귀착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전국 4년제 일반대학의 경우 고소득층의 비율이 43.9%, 저소득층 29.2%, 중위소득계층은 26.9%로,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귀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특히 면세점 이하의 소득근로자의 경우 해당 개정을 통해 전혀 수혜를 받지 못하는 반면, 고소득 가구의 경우 해당 개정을 통한 조세감면의 이익을 최대한 얻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개정안은 나이 요건 외에 소득요건까지 함께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있는데, 이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비를 충당하는 생계형 대학생을 지원한다는 당초 취지와는 달리 ① 직업을 가지고 업무를 주로 영위하는 등 경제활동 능력이 있는 고소득 성인 자녀가 학업을 일부 병행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② 직계비속이라는 요건이 없어 기본공제대상자이면서 대학생이라

면 배우자·형제자매도 소득 유무에 무관하게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데,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49

5.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과세관할 명확화(정부안)

현 행	개정안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제81조의10제2항) ☐ 사업자가 아닌 자가 허위로 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발급한 자를 사업자로 보아 <u>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u> 이 가산세 부과·징수	☐ 과세관할 명확화 ☐ <u>납세지 관할 세무서장</u> 이 가산세 부과·징수 ☐ 시행일: 2026년 1월 1일

* 정부안 2025. 9. 3. 제출 (의안번호 12655)

- ☐ 개정안은 사업자가 아닌 자가 허위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의 가산세 과세관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임.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않고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10제2항은 해당 행위자를 사업자로 간주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세무서장’이 가산세를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하여 과세관할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 ☐ 개정안은 다음의 점에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첫째, 현행법은 ‘사업자가 아닌 자’의 허위 계산서 발행행위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사업자가 아닌 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자를 의미하므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세무서장’ 역시 존재하지 않음. 따라서 가산세의 과세관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둘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닌 자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행위에 대한 가산세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부가가치세법」 제 60조제4항³⁴⁾), 법조문의 체계성·통일성 측면에서 볼 때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문 의 처

02)6788-5149

34)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④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사업자로 보고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에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가산세로 징수한다. 이 경우 제37조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은 0으로 본다.

6.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시행시기 유예(정부안)

현행	개정안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가산세 (법률 제19196호 (2025.1.1. 시행) 제81조의11) ☐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관련 미제출 가산세 - 기한 내 미제출 시 : 0.25% - 기한 후 1개월 내 제출: 0.125% ☐ 시행일 : 2026. 1. 1.(정부안)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감면기한 연장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199호(2025.1.1. 시행) 제104조의5 및 부칙)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
☐ (적용대상)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 및 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 ☐ (공제금액) 기재된 소득자 수당 200 원 ☐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세무회계법인 600만원), 최소공제액 1만 원 ☐ (적용기간) 2026.1.1. ~ 2027.12.31.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적용기간) 2027.1.1. ~ 2028.12.31.

* 정부안 2025. 9. 3. 제출 (의안번호 12655), 정부안 2025. 9. 3. 제출 (의안번호 12653),

☐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소득 지급액 및 원천징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기록한 “지급명세서”를 매년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관청은 이러한 지급명세서를 제출받아 소득을 파악하고 과세에 활용하고 있음.

한편, 총급여액이 일정 수준 미만인 가구에 대해 지급되는 근로장

려금³⁵⁾이 2019년부터 종전의 연 1회가 아닌 연 2회로 나누어 지급³⁶⁾되기 시작하면서 근로장려금 지급의 전제로서 연 2회 소득정보 확인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2018년 세법 개정을 통해 “간이 지급명세서”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도입 당시에는 이를 “상용근로소득”(일용근로자³⁷⁾가 아닌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 이하 같음)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대상으로 매 반기(연 2회)마다 제출하도록 하였음.

이후 2020년 발표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³⁸⁾에 따라,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가 추진되면서, 방문판매원 등 일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기 위해³⁹⁾ 월 단위 소득이 필요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2021년 3월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35) 일정 소득 이하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에 대해 총급여액 및 가구원 구성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최대33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임(「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 등)

36) 예를 들어 기존에 많은 소득이 있다가 해당연도 상반기에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 기존 연 1회 지급 시에는 다음 해 9월이 되어서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연 2회 지급 시에는 상반기 저소득 정보가 곧바로 파악되어 당해 연도 하반기(통상 12월)에 바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37) 세법상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등을 의미함.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의 근로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일용근로자의 범위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①법 제14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한 자

38) 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근로자 등 기존에 고용보험 제도에서 제외되어 있던 사람들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일정 소득 이상의 모든 취업자에 대해 소득정보 기반으로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하려는 것임(「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발표」, 고용노동부, 2020. 12.)

39)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대부분 고정된 소득을 얻지 않기 때문에 고용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 지급조건 충족 여부 판단 등을 위해 매월의 소득 파악이 필요함.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자”로 하여금 기존에 매 반기 제출하도록 했던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하였고,

2022년 정기회에서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024년 1월 1일부터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하는 대상을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까지로 확대하였으며,

2023년 정기회에서는 상용 근로소득자에 대해 월별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기본 전제인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의 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의무를 2026년 1월 1일로 연기하였음.

[소득종류 별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구분	소득종류	대표 직종	제출의무	소득과락주기
일용근로자	일용근로소득	건설일용직	지급명세서	매월
<u>상용근로자</u>	<u>상용근로소득</u>	사무직원	지급명세서	매년
			<u>간이지급명세서</u>	<u>매월(2026.1.1.시행)</u>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지급명세서	매년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	일회성강연자 임시판매원	지급명세서	매년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그 밖의 소득	-	지급명세서	매년

또한,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월별 제출에 따른 납세협력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 상시고용인원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1인당 200원씩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세무·회계법인의 경우 600만원)하는 제도를 신설하였음.

[지급명세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 개요]

구 분	내 용
공제대상	○ 상시고용인원 수가 20명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의 소득세 · 법인세 납부세액
공제액 및 공제한도	○ 공제액 : 간이지급명세서상의 소득자 1인당 200원 ○ 공제한도 : 연간 300만원(세무·회계법인 600만원)
적용기간	○ '26.1.1 ~ '27.12.31 까지 지급하는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 개정안은 정부가 당초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의 시행이 지연됨에 따라, 해당 제도를 수행하기 위한 전제로 선행하여 도입했던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의무”의 및 “지급명세서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시행시기를 현행 2026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1년간 유예하려는 것임.

정부의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르면, “소득기반 고용보험”이란 월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취업자에 대해 직종과 무관하게 전면적으로 고용보험제도를 적용하려는 것인데, 이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현재의 ‘근로시간 기준’에서 ‘소득 기준’으로 변경할 계획임.⁴⁰⁾

그런데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월별 소득정보 파악체계의 구축이 필요함에 따라, 정부는 2022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 대해 간이소득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 시행시기를 2024년 1월 1일로 정하였음.

그런데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의 도입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는 2023년 정기회에서 간이소득 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의무의 시행시기를 당초 2024년 1월 1일에서 2026년 1월 1일로 2년간 연기하였음. 그런데 동 제도의 도입이 현재까지도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정부는 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의무 등 제도의 시행시기를 2027년 1월 1일로 재차 연기하려는 것임.

- 현행 「고용보험법」에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 시행과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동 제도만 별도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경우 납세자들에게 불필요한 납세 부담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 소득기반 고용보험제도의 시행시기에 맞추어 간이소득 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의무의 시행시기를 연기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됨.
-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매월로 단축하여 시행하면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 특히 세무대리인 등의 도움

40)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고용노동부, 2020.12.

없이 직접 상용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납세협력비용이 증가하게 됨. 그런데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의 매월 제출은 “소득기반 고용보험 제도”의 적용을 위해서 도입하려는 것인바, 해당 제도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⁴¹⁾에서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만을 월 단위로 변경하는 것은 소상공인의 납세협력비용을 불필요하게 가중하는 것임.

□ 그런데 당초 정부는 “소득기반 고용보험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을 2025년 10월 중 제출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현재⁴²⁾까지도 소득기반 고용보험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① 「고용보험법」의 개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선제적으로 「소득세법」상 시행시기를 재차 연기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② 향후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심사 경과를 참고하여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제도의 적절한 시행 시점에 관해 논의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특정 조세제도의 시행시기가 반복적으로 연기될 경우, 법적 예측가능성이 훼손되고, 납세자의 정책 신뢰도 및 납세 준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 따라서 기획재정부는 전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제도의 변경에 신중을 기하고,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

41) 고용노동부는 당초 “① 2022년~2023년 임금근로자의 관리체계를 소득기반으로 변경하고, ② 2024년~2025년 고용보험을 소득기반 인별 관리체계로 전환할 계획”으로 발표하였으나, 2023년에 재차 “2022년 말까지 임금근로자 및 소득과약이 가능한 노무제공자를 대상으로 소득기반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2024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여 법령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세부 계획을 수정한 바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도 관련 법령의 개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음.

42) 2025.11.4.기준

행시기를 변경하는 법률개정이 불필요하게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
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49

7. 종신수령 방식의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 인하 (김영진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연금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 (제129조제1항제5호의2) ☐ 적용대상 : 사적연금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 분리과세 세율 : - (55세~69세) 5%, - (70~79세) 4%, - (80세~) 3%, - <u>(종신수령) 4%</u> ☐ 한도: 연간 1,500만원 이하	☐ <u>종신수령 방식의 경우 분리과세 세율 인하</u> ☐ 적용대상 : (현행과 같음) ☐ 분리과세 세율 :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종신수령) 3%</u> ☐ (현행과 같음)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김영진의원안 2025. 8. 22. 발의(의안번호 12275), 정부안 2025. 9. 3. 제출 (의안번호 12655)

☐ 2건의 개정안은 종신수령 방식의 연금에 대해 분리과세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으로, 종신계약⁴³⁾에 따라 연금수령하는 경우 적용되는 분리과세 세율을 현행 4%에서 3%로 1%p 인하함으로써 노후 연금수령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임.

☐ 현재 연간 연금소득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 수령 시 3%~5%⁴⁴⁾가 원천징수되고 납세의무가 종결되며, 1,500만원을 초과

43)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의2(종신계약의 범위) 법 제129조제1항제5호의2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이란 사망일까지 연금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을 말한다.

하는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6%~45%)하거나 연금소득만을 별도로 분리과세(15%)⁴⁵⁾ 하도록 선택할 수 있음.

2013년 이전 연금소득의 분리과세 적용대상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었고 한도는 연간 600만원이었으나, 2013년 세법개정으로 적용대상을 사적연금으로 한정⁴⁶⁾하면서 그 한도를 연간 1,200만원으로 상향하였고, 2022년 세법개정으로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5%의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23년 세법개정을 통해 한도가 연간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음.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최근의 계속되는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44) 연령별로 70세 미만 5%, 70~80세는 4%, 80세 이상은 3%가 과세되며,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은 4%의 세율이 적용됨.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의2.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한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각 목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때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

가.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른 다음의 세율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세율
	70세 미만	100분의 5
70세 이상	80세 미만	100분의 4
80세 이상		100분의 3

다. 사망할 때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4

45) 「소득세법」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은 다음 각 호의 세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1. 종합소득 결정세액

2. 다음 각 목의 세액을 더한 금액

가.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소득 중 분리과세연금소득 외의 연금소득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46) 참고로 공적연금에 따른 소득의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됨.

분리과세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노후 빈곤 문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연도별 소비자물가지수]

연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2021년	2023년	2024년
소비자 물가지수	89.9	93.0	94.9	97.6	99.5	102.5	111.6	114.18

자료: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조사”, 2020년=100 기준

자료: 「소비자물가조사」, 국가데이터처 (KOSIS 국가통계포털)

2024년의 한국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6%, 2024년의 물가상승률은 2.3%로 비교적 안정추세에 이르렀으나 코로나19등을 기점으로 지속된 공급망 체계의 변동으로 높은 물가상승률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연금소득으로 생활비를 충당하여야 하는 연령계층에서는 물가상승의 체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짐.⁴⁷⁾

[2021년~2023년 간 월 평균 노후생활비 변동]

(단위: 원)

구 분		2021년	2023년	증가율
1인	최소 노후생활비	124.3만원	136.1만원	9.4%
	적정 노후생활비	177.3만원	192.1만원	8.3%
부부	최소 노후생활비	198.7만원	217.1만원	9.3%
	적정 노후생활비	277.0만원	296.9만원	7.2%

자료: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국민연금공단 (KOSIS 국가통계포털)

47) 「고령 연금수급자 소득대체율에 대한 재고찰: 고령소비자물가지수 연동을 중심으로」, 보험연구원, 2016. 이에 따르면 고령층이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은 전체 소비자 물가상승률보다 1.14배 높았으며, 저소득 고령층의 경우 1.20배 높음.

둘째,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감안할 때 노후연금 관련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OECD의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39.7%로 33개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⁴⁸⁾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낮은 이유는 공적연금의 낮은 급여 수준, 노동시장의 취약성, 가족부양 추세의 약화, 부동산자산 치중에 따른 자산의 소득화 비율 저조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은퇴 후 생애 전 기간에 걸친 안정적 현금흐름이 부족한 것도 중요한 원인임.

따라서 종신계약 방식의 연금에 대해서 분리과세 세율을 하향함으로써, 연금소득 수령자의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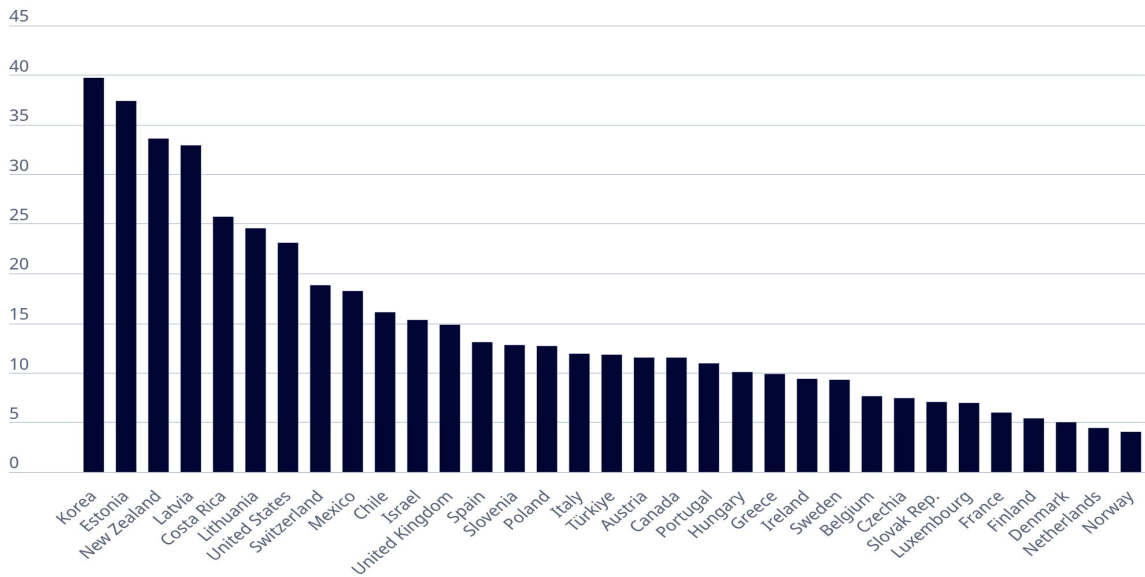
[OECD 국가별 빈곤율 비교]

순위	국가	66세 이상 빈곤율	전체 빈곤율	순위	국가	66세 이상 빈곤율	전체 빈곤율	순위	국가	66세 이상 빈곤율	전체 빈곤율
1	대한민국	39.7	14.9	12	영국	14.9	11.8	23	아일랜드	9.5	7.0
2	에스토니아	37.4	16.2	13	스페인	13.1	13.7	24	스웨덴	9.4	8.4
3	뉴질랜드	33.7	14.3	14	슬로베니아	12.8	7.9	25	벨기에	7.7	6.9
4	리투아니아	33.0	16.9	15	폴란드	12.8	9.1	26	체코	7.6	6.2
5	코스타리카	25.8	21.0	16	이탈리아	12.0	12.2	27	슬로바키아	7.2	9.4
6	리투아니아	24.6	14.1	17	튀르키예	11.9	13.2	28	룩셈부르크	7.0	8.9
7	미국	23.1	18.1	18	오스트리아	11.6	9.6	29	프랑스	6.1	8.3
8	스위스	18.8	10.7	19	캐나다	11.6	11.9	30	핀란드	5.5	6.7
9	멕시코	18.3	15.0	20	포르투갈	11.0	11.2	31	덴마크	5.0	6.3
10	칠레	16.2	16.3	21	헝가리	10.1	9.9	32	네덜란드	4.4	7.1
11	이스라엘	15.3	16.8	22	그리스	10.0	11.2	33	노르웨이	4.1	8.0

48) OECD(<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poverty-rate.html>)

Poverty rate

66 year-olds or more, % of population, 2022



Source: [Income distribution database](https://data.oecd.org/income-distribution/)

© OECD

자료: OECD(<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poverty-rate.html>)

주: 순위는 빈곤율 기준

OECD의 빈곤율 정의: 해당 연령층의 가처분소득 기준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 50% 미만인 인구 비율

셋째, 퇴직연금의 경우 2022년 중 퇴직급여 수급을 개시한 계좌의 대부분(92.9%)이 일시금 수령을 선택⁴⁹⁾하여 연금화를 통한 노후소득재원 마련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퇴직연금 연금수령 비율]

구 분	계좌기준		금액기준	
	일시금수령	연금수령	일시금수령	연금수령
연금수령 비율	92.9%	7.1%	58.1%	41.9%

자료: 「2022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023.7.

49) 연금수령을 선택한 비율이 7.1%(퇴직급여액 전체 12.1조원 기준 41.9%)로 나타남. 참고로 연금수령 계좌의 평균 수령액은 1억 5,550만원임. (자료: 「2022년도 퇴직연금 적립 및 운용현황 분석」, 고용노동부·금융감독원, 2023.7.)

또한 연금수령을 개시한 연금계좌의 수령형태를 살펴보면 확정기간형이 57.4%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종신행은 38.9%로 상대적으로 낮음. 특히 10년의 미만 단기 수령형태가 46.9%로 나타나고 있는데,⁵⁰⁾ 연금소득을 통해 노후 전 기간에 걸친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종신행 방식의 연금소득의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해당 방식에 선호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종신행을 통한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2022년 기준 종전 1,200만원 이상의 사적 연금소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종합과세(세율 6~45%)를 적용하였던 것에 비하여 2022년 및 2023년의 세법개정으로 각각 1,200만원 및 1,500만원 이상의 사적 연금소득에 대해 15% 세율의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을 두 차례 확대한 바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둘째, 종신행 연금저축에 대한 분리과세세율을 인하할 경우, 이미 과세이연 혜택과 저율 분리과세라는 이중의 조세지출을 받고 있는 연금수령자에 세 부담 경감이 집중될 수 있음. 특히, 연금계좌 가입 및 납입은 주로 재정적 여유가 있는 고소득층 위주로 이루어지므로⁵¹⁾, 해당 계층에 감면수혜가 집중될 우려가 있음. 이는

50) “2024년 연금저축 운용현황”, 금융감독원, 2025.7.31.

51) 근로소득구간별 연금계좌 가입자 수는 2,000만원 미만 구간 0.1%, 2,000만원~4,000만원 구간 2.5%인 반면,

동일한 노후소득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과세 체계에 남아 있는 노후 근로·사업소득자들에 비해 실효세율이 더 낮아지도록 함으로써 해당 제도의 역진성을 심화시키고, 조세형평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근로소득구간별 연금저축 가입자]

(단위 : 천명)

근로소득구간 구분(만원)	2천 ↓	2~4천	4~6천	6~8천	8천~1 억	1억 ↑	전 체
가입률(B/A)	0.1%	2.5%	10.1%	22.6%	34.6%	50.7%	10.0%
가입자수(B)	6	180	370	439	393	706	2,094
급여소득자수(A)	5,433	7,266	3,682	1,943	1,136	1,393	20,852

자료: “2024년 연금저축 운용현황”, 금융감독원, 2025.7.31.

주: 급여소득자수 -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신청한 근로소득자 기준('24년 국세통계연보)

셋째, 연금수령 단계의 세율인하가 종신계약을 유인하는 효과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보험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사적연금을 가입하는 동기에 대한 조사결과 “공적연금으로 노후생활이 부족할 것”이라는 항목이 44.8%(1,2순위 복수응답 기준 57.9%), “노후소득 여유 보장”이 27.3%(복수응답 기준 63%)로 각각 높게 나타난 반면, “세제혜택 목적”으로 가입한 응답자는 2.7%(복수응답 기준 8%)에 불과해, 세제 혜택이 가입 동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⁵²⁾ 따라서 세제 혜택을 통한 종신계약 유인효과에 대한 면밀한 선행검토 없이 세율인하를 추진할 경우, 신규 종신계약 가입자를 증가시키려는 정책목표는 달성하지 못하고, 종신수령을 계획

8,000만원~1억원 구간은 34.6%, 1억원 이상 구간은 50.7%로 연금저축 가입이 고소득자 위주로 집중되어 있음. “2024년 연금저축 운용현황”, 금융감독원, 2025.7.31.

52) “고령화와 노후준비”, 보험연구원, 2016.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한도액까지 납입해 놓은 고소득자에게 더 낮은 세액을 적용해 주는 데 그칠 위험이 있음.

[개인연금 가입 동기]



자료: “고령화와 노후준비”, 보험연구원, 2016.

- 한편 예산정책처 및 기획재정부는 정부제출안에 따라 종신수령 방식의 사적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세율을 인하하고(안 제129조제1항제5호의2),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의 세율을 인하할 경우(안 제129조제1항제5호의3), 2026년에서 2030년까지 5년간 총 930억원(연평균 186억 원)의 소득세가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정부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정부안	△146	△164	△184	△206	△230	△930	△186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기획재정부

문 의 처
02)6788-5149

8.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신영대의원안, 김영진의원안, 정부안)

현 행	김영진의원안, 정부안	신영대의원안
☐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시 분리과세 세율 (제129조제1항제5호의 3) ○ 수령연차 10년 이하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u>100분의 70</u> ○ 수령연차 10년 초과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u>100분의 60</u> <신 설> <신 설>	☐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시 분리과세 세율 구간 세분화 ○ (현행과 같음) ○ 수령연차 <u>10년 초과 20년 이하</u>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u>100분의 60</u> ○ <u>수령연차 20년 초과</u>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u>100분의 50</u>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지급한 소득의 원천징수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 이연퇴직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 및 종신계약시 세율 신설 ○ 수령연차 10년 이하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u>100분의 50</u> ○ 수령연차 10년 초과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u>100분의 30</u> ○ <u>사망시까지 연금수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신계약의 경우</u> :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u>100분의 10</u> (안 제3호다목 신설) ○ 시행일 : 공포 후 3개월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신영대의원안 2025. 3. 26. 발의(의안번호 9391), 김영진의원안 2025. 8. 22. 발의(의안번호 12275), 정부안 2025. 9. 3. 제출 (의안번호 12655)

☐ 개정안은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천징수세

을 적용비율을 인하함으로써 노후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고,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김영진의원안 및 정부안은 연금 수령연차 10년 초과 구간(현행 세율 60%)를 세분화하여, ① 연금 수령연차가 10년 초과 20년 이하 구간의 세율을 60%로, ② 20년 초과 구간의 세율을 50%로 각각 인하하려는 것이고,

신영대의원안의 경우 연금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의 경우 세율을 현행 70%에서 50%로, 연금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한 경우 세율을 60%에서 30%로 각각 인하하고, 사망시까지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더 높은 비율(90% 인하)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여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려는 것임.

□ “이연퇴직소득”이란 「소득세법」 제146조제2항⁵³⁾에 따라 퇴직금을 연금계좌⁵⁴⁾에 이체함으로써 인출시점까지 퇴직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퇴직소득을 말하며, 거주자는 연금계좌에 이체한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거나 연금외수령⁵⁵⁾ 할 수 있음.

53) 「소득세법」

제146조(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②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54) “연금계좌”란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를 말함.(「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퇴직연금계좌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등으로 분류하며, 이 중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이직·퇴직 시 수령한 퇴직금을 적립·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2023년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인원은 321만 5천명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하였음. (국가데이터처 보도자료, “2023 퇴직연금통계 결과, 2024.12.16.”)

55)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9조⁵⁶⁾에 따라 ①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퇴직소득세율)의 70%의 세율로, ②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율을 인하하고(김영진의원안, 신영대의원안, 정부안), 종신계약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율의 10%를 적용하여 저율과세함으로써(신영대의원안) 퇴직금의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려는 것임.

□ 개정안들은 이연퇴직소득의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여 노후 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측면이 있음.

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퇴직소득을 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frac{\text{연금계좌의평가액}}{(11 - \text{연금수령연차})} \times \frac{120}{100}$$

④ 제3항제3호의 계산식에서 “연금수령연차”란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를 말하며,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계산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산연차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2013년 3월 1일 전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이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라 한다)에 가입한 사람이 퇴직하여 퇴직소득 전액이 새로 설정된 연금계좌로 이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경우: 6년차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한 경우: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의 연금수령연차

56)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5의3.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 이 경우 연금 실제 수령연차 및 연금외수령 원천징수 세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70

나.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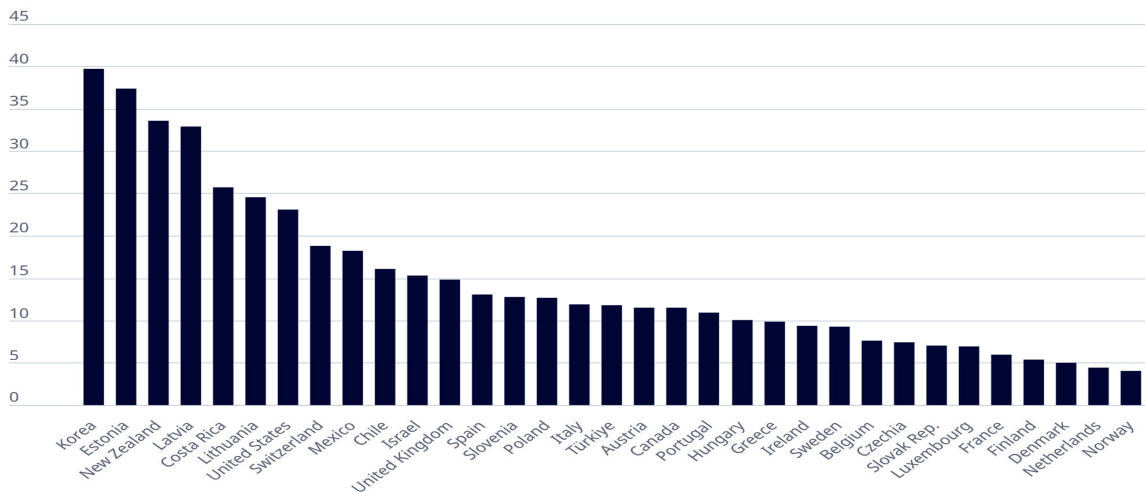
OECD의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39.7%로 33개 조사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수준임.⁵⁷⁾

[OECD 국가별 빈곤율 비교]

순위	국가	66세 이상 빈곤율	전체 빈곤율	순위	국가	66세 이상 빈곤율	전체 빈곤율	순위	국가	66세 이상 빈곤율	전체 빈곤율
1	대한민국	39.7	14.9	12	영국	14.9	11.8	23	아일랜드	9.5	7.0
2	에스토니아	37.4	16.2	13	스페인	13.1	13.7	24	스웨덴	9.4	8.4
3	뉴질랜드	33.7	14.3	14	슬로베니아	12.8	7.9	25	벨기에	7.7	6.9
4	리투아니아	33.0	16.9	15	폴란드	12.8	9.1	26	체코	7.6	6.2
5	코스타리카	25.8	21.0	16	이탈리아	12.0	12.2	27	슬로바키아	7.2	9.4
6	리투아니아	24.6	14.1	17	튀르키예	11.9	13.2	28	룩셈부르크	7.0	8.9
7	미국	23.1	18.1	18	오스트리아	11.6	9.6	29	프랑스	6.1	8.3
8	스위스	18.8	10.7	19	캐나다	11.6	11.9	30	핀란드	5.5	6.7
9	멕시코	18.3	15.0	20	포르투갈	11.0	11.2	31	덴마크	5.0	6.3
10	칠레	16.2	16.3	21	헝가리	10.1	9.9	32	네덜란드	4.4	7.1
11	이스라엘	15.3	16.8	22	그리스	10.0	11.2	33	노르웨이	4.1	8.0

Poverty rate

66 year-olds or more, % of population, 2022



Source: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 OECD

자료: OECD(<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poverty-rate.html>)

주: 순위는 빈곤율 기준

OECD의 빈곤율 정의: 해당 연령층의 가처분소득 기준 전체 인구의 중위소득 50% 미만인 인구 비율

57)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2019년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23. 9. 20.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낮은 이유는 공적연금의 낮은 급여 수준, 노동시장의 취약성, 가족부양 추세의 약화, 부동산자산 치중에 따른 자산의 소득화율 저조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퇴직급여의 ‘연금화(annuitization)’ 비율이 낮은 것도 중요한 이유임.

퇴직금의 유형별 수령형태를 살펴보면, 2023년 중 퇴직연금 수급(만 55세이상)을 개시한 계좌 중 89.6%가 일시금을 선택하였으며 연금 수령은 10.4% 수준에 불과해,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일시금 수령의 계좌당 평균 수령액은 1,645만원으로 연금 수령계좌의 평균 수령액(1억 3,976만원)의 11.8% 수준으로, 적립금 규모가 적은 소액 계좌일수록 연금보다는 일시금 수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⁵⁸⁾

이러한 현상은 과거 퇴직일시금 수령 관행, 퇴직일시금에 대한 낮은 세율 등 제도적 영향, 정년 이후 연금수령 시작 시점까지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소득 절벽’⁵⁹⁾구간으로 인한 생활비 마련 필요성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이로 인해 연금형태 등 정기소득보다 일시금 형태의 수령이 선호되고, 해당 일시금이 조기 소진되면서 노년기 빈곤 위험이 급등하게 됨.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여 노후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비중이 낮은 점, 상대적으로 연금 적립규모가 작은 계좌들이 일시금 형태의 연금외수령 비율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퇴직소득을 연금

58)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퇴직연금 총 적립금 382.4조원, 5년간 2배 성장”, 2024년 5월 17일자

59)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령 시점 (60세 이후 65세)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

형태로 수령하도록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⁶⁰⁾ 따라서 퇴직소득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고, 종신수령 계약에 대해 추가적으로 세율을 인하함으로써 이연퇴직소득을 장기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다만, 연금계좌의 수익률이 높지 않아 선호도가 떨어지는 점,⁶¹⁾ 목돈 필요성 등을 사유로 가입자가 연금계좌를 중도인출 또는 해지하는 비중이 높은 점,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할 경우 적용되는 퇴직소득세의 실효세율이 높지 않은 점⁶²⁾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⁶³⁾, 개정안에 따른 세금부담의 일부 경감만으로는 이연퇴직소득을 장기 연금수령방식으로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한편 예산정책처는 신영대의원안에 따라 이연퇴직소득 연금수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할 경우 연금소득세수는 2026년 596억원 등 2026~2030년까지 5년간 총 3,901억원(연평균 78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60) 특히 일시금은 노후자금에 아닌 단기간의 소비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일부 국가들은 일시금 수령을 제한하기도 함. 네덜란드는 10만 유로(1억 5,000만원 상당) 이하 퇴직금에 대해 일시금 수령을 금지화하고 연금 수령을 의무함.

61) “퇴직연금 총 적립금 382.4조원, 5년간 2배 성장”,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4.5.16. 퇴직연금 연간 수익률의 최근 5년 및 10년간 연환산 수익률은 각각 2.35%, 2.07%로 2025년 5월 한국은행 기준금리인 2.75%보다 낮음.

62) 실제로 퇴직소득세는 연말정산 때 인적공제 등 여러 항목을 공제해주다 보니, 상대적으로 공제율이 높아 실효세율이 4~5%에 불과하여 연금소득세 실효세율(1~2%가량)과 비교해 차이가 크지 않음. “퇴직급여, 연금으로 장기수령할수록 세금 더 감면받는다”, 세무사신문. 2025.2.24

63) 강성호, 류건식, “퇴직소득세 개선과 연금화 방안”, 보험연구원 고령화리뷰 제13호, 2017. 9. 10.

[신영대의원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세수추계 결과(2026~2030년)]

(단위: 억원)

	2026	2027	2028	2029	2030	누적	연평균
신영대의원안	△596	△677	△768	△871	△989	△3,901	△78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문 의 처

02)6788-5149

9.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규정 신설(정부안)

현 행	개정안
☐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제144조의2) ○ (대상)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소득자 ○ (추가납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 원천징수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한 잔여액을 원천징수 < 신 설 >	☐ 추가납부세액 분납규정 신설 (현행과 같음) ○ 추가납부세액 분납규정 신설(제2항) - (대상) 추가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방법) 3개월(2~4)월에 나누어 원천징수 가능 * (제외)해당 사업자와의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 적용례: 2026년 2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사업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거나 2월분의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2월 말일)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정부안 2025. 9. 3. 제출 (의안번호 12655)

☐ 개정안은 「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가 인정되는 사업소득자⁶⁴⁾(이하 ‘연말정산 사업소득자’)가 연말정산 이후 추가납부세액이 일정 금액 이상 발생한 경우, 이를

64)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분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자 중 법 시행령 제137조에 따라

① 간편장부대상자⁶⁵⁾이면서 ②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⁶⁶⁾, 개정안은 이들에게도 근로소득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에 대해 분납을 허용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다음의 점에 있어 그 타당성이 인정됨.

첫째,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연말정산 사업소득자들은 특정 인적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자들로 형식적으로는

65) 「소득세법」 제160조(장부의 비치·기록) ②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라 한다)를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 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법 제160조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2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나목 및 다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원
 -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한다),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5천만원
 - 다.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7천500만원

66)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법 제7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해당 사업소득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자가 받는 사업소득은 해당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144조의2 및 이 영 제201조의11에 따라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한다.

1.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후원방문판매업을 수행하고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3.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개인사업자이나, 완납적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등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정산되고, 지급처가 해당 사업자의 수입을 전부 파악하고 있는 등 그 실질은 근로소득자와 유사함. 그런데 근로소득자의 경우 2015년 소득공제 항목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부담 경감을 위해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에 대한 분납제도를 도입하였음⁶⁷⁾. 따라서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그 실질이 유사한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에 대해서도 분납제도를 도입할 유인이 있음.

둘째,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추가 납부세액이 평균적으로 100만원 이상으로 상대적으로 고액에 해당하므로⁶⁸⁾, 납세자 부담 경감 차원에서도 분납의 필요성이 인정됨.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추가 납부세액을 일시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가처분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될 수 있음.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3개월의 분납을 허용할 경우 연말정산 사업소득자의 일시납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급격한 가처분 소득 감소를 방지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분납대상 금액이 많아질수록 세액의 국고 수납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국가의 재정 현금흐름이 지연되고 이자 비용이 증가하며, 국고금 일시차입 소요가 확대되는 등 재정 운용상 부담이 증가하게 됨. 또한, 분납 대상자가 확대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와 세정당

67)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 3. 10.>

68) 기획재정부 제출자료

국의 행정부담이 증가하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49

10.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매출전표 합산발행 허용범위 시행령으로 위임(정부안)

현행	개정안
□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허위발급 금지(제162조의2제2항) ○ 신용카드 가맹점의 매출전표 발급 거부, 허위매출전표 발급 금지 ○ (매출전표 합산발행 허용요건) - 주체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 - 합산 방식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운용 - 기타 요건: 사업자 간 사전 약정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허위발급 금지(제162조의3제2항)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허위 현금영수증 발급 금지 < 신설 >	□ 신용카드가맹점의 신용카드매출전표 합산발행 허용범위 확대 및 대통령령으로 위임 ○ (현행과 같음) ○ (매출전표 합산발행 허용요건) - 주체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u> - 합산 방식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운용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u> < 삭제 > □ 현금영수증 합산발행 허용범위 확대 및 대통령령으로 위임 ○ (현행과 같음) ○ 현금영수증 합산발행 허용요건 신설(제2항 단서 신설) - 주체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

현 행	개정안
	<u>설을 운영하는 자</u>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u> - 합산 방식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운용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u> ○ 시행일 : 2026년 1월 1일 ○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 정부안 2025. 9. 3. 제출 (의안번호 12655)

□ 현행 「소득세법」은⁶⁹⁾, 신용카드 가맹점이 사업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69) 「소득세법」 제162조의2(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의무 등) ① 국세청장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납세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가입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상대방이 대금을 제35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경우 이를 거부하거나 제160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라 한다)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항에서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대규모점포등 내의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대규모점포등을 운영하는 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의 설비를 운용하는 경우로서 사업자 간 사전 약정을 맺은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 12. 27., 2016. 12. 20.>

③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당하거나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받은 자는 그 거래 내용을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신용카드가맹점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신고금액을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세청장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거부하거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 그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⑥ 신용카드가맹점 가입을 위한 행정지도,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거부 및 사실과 다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의 신고·통보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있음. 이는 세원 파악의 핵심자료인 매출전표의 왜곡을 방지함으로써 과세자료로서의 신뢰를 확보하고, 매출누락·위장가맹점 등을 활용한 탈세를 방지하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임. 특히 ‘다른 사업자의 매출을 합산 발급하는 행위’는 불법 위장가맹점 문제로 직결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함임.

- 다만 현행법은 예외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대규모점포등”)을 운영하는 자가 대규모점포등 내의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는 이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음. 이는 대규모점포(백화점, 쇼핑몰)나 체육시설(스포츠센터, 골프장 등)은 동일한 관리주체가 다수 입점업체의 시설을 통합 관리하며, 이에 따라 사용자가 입점업체별로 결제할 경우 소비자의 불편, 운영상 비효율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⁷⁰⁾ 등 통합결제·정산 체계가 갖춰져 세원의 누락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임.

70)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이란 상품을 판매할 때 활용하는 시스템으로서 광학적 자동판독방식에 따라 상품의 판매·매입 또는 배송 등에 관한 정보가 수록된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162조의 2 제2항의 조문구 조]

원칙	예외		
매출전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 금지	요건	내용	타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매출전표 발급 허용 ⇒
	주체	-대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매출전표 발급방식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운용	
	기타요건	사업자 간 사전 약정	

□ 개정안은 현재 「소득세법」 제162조의2에 명시되어 있는 허위매출전표 발급금지규정의 예외 관련규정 중 ‘주체 요건’ 및 ‘매출전표 발급방식’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동법 제163조의3에 규정된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합산발행 대상업종과 합산발행 방식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합산 발행하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먼저 대상업종과 관련하여, 정부는 여행업을 추가할 계획임⁷¹⁾. 여행업의 경우 항공권, 숙박, 교통, 입장권, 식사, 가이드 비용 등 다수의 공급자의 서비스를 일괄하여 하나의 패키지로 판매하는 방식

71) 다만 정부는 이를 법률에 명시하지는 않고, 대상업종을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한 후, 대통령령 개정 과정에서 여행업을 추가할 계획임.

으로 운용됨에 따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대한 합산발행을 금지할 경우 소비자 및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절차만 강요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합산하여 발급할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음.

다음으로, 정부는 발행방식과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규정된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ERP)’⁷²⁾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과 마찬가지로 합산발행의 방식으로 포함시킬 예정임.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는 대규모 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부, 또는 여러 지점이 있는 사업자들이 본사 단일시스템에서 매출·재고·정산을 통합 관리하기 위해 활용되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서도 사업자의 판매·거래 데이터등 세원을 집계·관리할 수 있음. 특히 온라인 위주 사업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없이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로만 사업을 운영하는 사례도 있음.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비교]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ERP)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주요 목적	기업 전반의 자원 통합 관리	매장 내 판매 및 결제 처리
주요 기능	생산, 인사, 회계, 구매, 물류 등 통합관리	상품 판매, 영수증 발행, 재고 차감, 고객 응대 등

72)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자가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8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을 「소득세법」 제32조 및 「법인세법」 제36조를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구매·설계·건설·생산·재고·인력 및 경영정보 등 기업의 인적·물적 자원을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 소프트웨어, 통신설비, 그 밖의 유형·무형의 설비로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설비(이하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 관리설비”라 한다)

또한 법인 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법」 제117조에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및 현금영수증 합산발행 대상의 범위 및 발급방식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⁷³⁾, 동법 시행령에 여행업을 합산발행 주체로,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를 합산발행의 방식으로 각각 명시하고 있는데⁷⁴⁾, 「소득세법」을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규정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법인사업자와 동일하게 규율하고, 법체계의 통일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의 위임범위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합산발행은 위장가맹점 문제가 발생할 우려로 인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허용하더라도 그 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 허용요건을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에 의할 경우 합산발행의 허용요건이 전체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될 수 있음. 즉 개정안은 예외사유의 주체 요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추가하고, 매출 전표 발급방식 요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를

73) 「법인세법」 제117조(신용카드가맹점 가입·발급 의무 등) ② 신용카드가맹점(제1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 가맹한 사업자를 말하며, 이하 이 조, 제66조제2항제3호 및 제75조의6에서 같다)은 사업과 관련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사실과 다르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규모점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설치·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의 매출과 합산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74)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신용카드가맹점의 가입 등) ② 법 제1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③ 법 제11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의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설치·운영하는 방법을 말한다.

추가하며, “사업자간 사전 약정”요건을 폐지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동조 단서 예외사유 주요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려는 것임.

[현행법과 개정안의 허용요건 비교]

	현행	개정안
주체	-대 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대 규모점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신설)
허용행위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매출전표 발급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매출전표 발급
매출전표 발급방식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운용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 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신설)
기타요건	사업자 간 사전 약정	(삭제)

개정안에 따를 경우 국회의 공론화 및 심의과정 없이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합산발행 허용범위를 확대하기가 용이해짐. 따라서 긴급하게 허용요건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 높지 않다면 해당 업종 및 발행방식의 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하지 않고,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임.

문 의 처
02)6788-5149

11.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정부안)

현 행	개 정 안
□ 양도가액(제96조) -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거래가액 ○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한 경우 : 시가 ○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 양도가액 - 증여재산가액 * 양수·양도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 과세 - <신 설>	□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u>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된 금액</u>이 있는 경우 : 양도가액 - 소득처분금액 ○ (시행일) 2026.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제12655호)

□ 개정안은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기타사외유출이 아닌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소득처분금액을 뺀 가액을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산정하려는 것임.

현행 「소득세법」 제96조⁷⁵⁾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및

75)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6.12.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⁷⁶⁾는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의 자에게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시가의 30% 초과)으로 양도한 경우,

시가 초과분의 일정 부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자에게 귀속되는 차익의 일부가 증여세로 과세됨에 따라 양도소득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공제하고 계산함으로써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이중 과세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있음.

□ 한편, 「법인세법」 제67조⁷⁷⁾ 및 舊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제3호⁷⁸⁾는 기부금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하도록 함으로써,

② 삭제<2016.12.2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뺀 금액

7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자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자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16.2.5.>

④ 법 제3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

77)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78) 舊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법 제24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고가 양수한 법인은 「법인세법」 제2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79)에 따라 정상가액(시가±30%)보다 높은 금액으로 매입한 가액은 기부금으로 보아 한도초과시 손금불산입하고, 매입가액과 정상가액의 차이를 △유보로 소득처분하고, 동 유보 금액은 추후 양도시 반대조정(유보)으로 추인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정이 이루어지고, 고가 양도한 거주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와 「소득세법」 제96조제3항제2호에 따라 양도대가에서 시가와 공제금액(3억원)을 제외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증여세로 과세하고, 양도가액에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 전 과세방식]

기부금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증여세로 과세 (실지거래가액 = 양도가액 - 증여재산가액)		
○ 시가가 5억원인 자산을 9억원에 거래(특수관계법인 외의 자)		
거래당사자	양도자	양수자
개인 ⇒ 법인	◦ 증여재산가액 1억원¹⁾ ◦ 양도차익 6억원²⁾	◦ 기부금 2.5억원³⁾ 익금산입 (기타 사외유출, 증여세 과세)
1) 증여재산가액 1억원 = 대가 9억원 - 시가 5억원 - 3억원 2) 양도차익 6억원 = (양도가액 9억원 - 증여재산가액 1억원) - 취득가액 2억원 3) 비지정기부금 2.5억원 = 양도가액 9억원 - 정상가액 6.5억원(시가 5억원 + 시가×30%) 취득가액 (2억원) 양도가액 - 증여재산가액 (8억원) 양도가액 (9억원) ← 양도소득세 → 증여세		

자료: 기획재정부

79)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기부금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인 외의 자로부터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더하거나 뺀 범위의 가액으로 한다.

그런데,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⁸⁰⁾는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에 한하여 기타 사외유출로 하고, 그 외 기부금의 경우에는 귀속자에 따라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하도록 개정(2020.2.11.)됨에 따라 기타 사외유출이 아닌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되는 경우에는 소득 귀속자의 종합소득세로 과세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⁸¹⁾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⁸²⁾에는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

80)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족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법 제24조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②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특례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특례기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부금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하는 것만 해당한다.

나. ~ 바. 생략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2., 2022.12.31.>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81) 기획재정부는 실제 과세 사례상 문제가 된 적은 없으나, 조문 체계상 미비가 발견되어 개정한다는 입장임.

8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질거래가액에 따른다. <개정 2016.12.20.>

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기타 사외유출이 아닌 배
당 등으로 소득처분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근거가 없음.

예를 들어,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시가 5억원 자산을
9억원에 고가 양도하였고, 주주 등 귀속자에 따라 배당 등으로 소
득처분된 경우,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된 2.5억원
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로 과세되고, 양도가액(9억원)에서 취득가액
(2억원)을 공제한 7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지만, 양도가액에서
소득처분된 금액(2.5억원)을 공제하게 되어 양도차익은 4.5억원으로
낮아지게 됨.

개정안은 거주자가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
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되는 경우에는 양
도가액에서 ‘소득처분금액’을 뺀 가액을 양도자와 양수자 간의 실
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하도록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이해됨.

② 삭제<2016.12.2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1. 「법인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여·배당 등으
로 처분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시가
2.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에서 증여재
산가액을 뺀 금액

[개정안에 따른 과세방식]

특례·일반 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배당·상여 등을 소득처분
(실지거래가액 = 양도가액 - 소득처분금액)

○ 시가가 5억원인 자산을 9억원에 거래(특수관계법인 외의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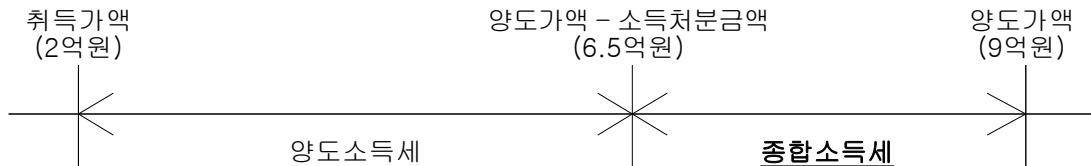
거래당사자	양도자	양수자
개인 ⇒ 법인	- 귀속자 종합소득세 과세 2.5억원¹⁾ (증여세 과세제외) - 양도차익 4.5억원²⁾	기부금 2.5억원³⁾ 익금산입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

1)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2.5억원 = 배당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금액

2) (현행) 양도차익 7억원 = 양도가액 9억원 - 취득가액 2억원

(개정안) 양도차익 4.5억원 = (양도가액 9억원 - 소득처분금액 2.5억원) - 취득가액 2억원

3) 비지정기부금 2.5억원 = 양도가액 9억원 - 정상가액 6.5억원(시가 5억원 + 시가×30%)



자료: 기획재정부

다만, 개정안은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
기타 사외유출이 아닌 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되는 경우 양도가액에
서 공제하는 근거가 없어 입법 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인데, ‘상여’는
특수관계자인 임·직원에게 처분되는 것이고,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는 제9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시가가 적용되므로 ‘상여’ 부분은 불
필요한 규정임.

따라서, 개정안의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상
여·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해당 거주자의 배당 등으로 처분된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48

1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배제 범위 확대(최은석의원안, 정부안)

현 행	개정안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제97조의2)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개념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특정자산을 10년(주식은 1년)내 양도하는 경우 수증자가 양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배제 - 양도 당시 증여자인 배우자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 <신 설>	☐ 적용배제 범위 확대 - (현행과 같음) ☐ <u>적용배제 범위 확대</u> - (현행과 같음) - <u>양도 당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도 포함</u> ☐ (시행일) 2026. 1. 1. 이후 양도 분

* 최은석의원안 2025. 8. 5. 발의(의안번호 11975) ,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5)

☐ 두 건의 개정안은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당시에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사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현행 「소득세법」 제97조의2⁸³⁾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한 자(배우자·직계존비속)가 당초 취득한 취득가액을 필

83)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①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 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제2항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요경비로 하여 양도소득을 계산(양도소득세 이월과세)함. 다만,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당시에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증여 당시 재산가액을 취득가액(이월과세 적용배제)으로 함.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는 증여자가 배우자 등(수증자)에게 부동산 등 자산을 증여한 다음 증여받은 배우자 등이 이를 단기간 내에 양도하면 취득가액의 인위적인 상승(step-up)으로 양도소득세를 현저히 줄일 수 있는데, 이러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증여자의 보유기간 중 가치상승분이 수증자의 양도차익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도록 설계된 제도임.

1997년 배우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도입(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적용) 이후, 2008년에는 양도 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여 배우자 범위를 확대하였고, 2009년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적용함으로써 이월과세 범위에 직계존비속을 포함시켰음.

2014년에는 양도일에 배우자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배제하도록 하였고,⁸⁴⁾ 2023년에는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에 적용함으로써 적용 기간을 강화하였고, 2025년부터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에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받은 주식

84)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배우자에서 제외되므로 증여한 배우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이것은 배우자로부터 자산을 상속받아 양도한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과 형평을 맞추려는데 그 취지가 있음

도 포함되었음.

□ 두 건의 개정안은 양도시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 사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세회피 가능성이 낮고, 상속시점에 상속세 납부를 통해 사전증여재산으로 시가 평가되어 해당 자산에 과세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시점에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도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함으로써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2013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 법률 제12603호)의 제안이유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납세형평을 제고하고 불합리한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으로 개정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직계존비속 사망의 경우에는 이월과세가 그대로 적용되도록 하였고,

동 법률안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⁸⁵⁾는 ‘배우자 사망은 납세의무자의사와 무관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세회피 목적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월과세 적용의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는 여전히 조세회피 목적의 우려가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둘째, 직계존비속 사망 시에는 증여재산이 상속재산에 자동 편입되

85) 2013년 세제개편 주요 쟁점 검토

는 구조가 배우자 사망 시와는 달리 명확하지 않아 사례별로 조세 회피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배우자 관계는 동일한 경제공동체로 보아 세제상 많은 공제가 주어지고 특수관계 판정시 사실혼도 대부분 포함되는 반면, 직계존비속 관계는 세대 간 부의 이전에 대한 조세중립성 확보를 목표로 하는 등 세법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48

13. 국외주식 거래명세서 수집 근거 마련(정부안)

현 행	개정안
☐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제174조의2) ☐ (대상) 금융투자업자 ☐ (제출주기) 분기별 -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거래 내역은 요청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 ☐ (제출자료)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 파생상품등 거래내역 - 장외매매거래 중개시 거래내역 -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등 거래내역 - <신 설>	☐ 제출자료 추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국외주식 거래내역 추가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u>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국외주식 등)의 거래내역</u> ☐ (시행일) 2026. 1. 1. 이후 발생하는 거래 분부터 적용

*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5)

☐ 개정안은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에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국외주식 등)의 거래내역을 추가하려는 것임.

☐ 현행 「소득세법」 제174조의2⁸⁶⁾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

86) 「소득세법」 제174조의2(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또는 행위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세청장이 요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에 따른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그 거래내역 등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
3. 양도소득세의 부과에 필요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거래내역 등으로서 대통령

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파생상품등의 거래내역, 장외매매거래 중개시 거래 내역,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등 거래내역에 대해 관할 세무서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최근 국내 개인투자자의 국외주식 투자 증가로 국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건수가 크게 증가(2019년 3만 3,779건 → 2023년 20만 7,231건)하였고,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적정여부에 대한 정확한 검증이 필요해진 상황임.

[국내 개인투자자 국외주식 거래 규모]

(단위: 억원, 건)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신고건수 ¹⁾	33,779	139,909	242,862	100,374	207,231
취득가액	96,600	588,079	967,641	552,472	816,417
양도가액	105,236	620,022	1,038,549	564,952	854,320
양도차익 ²⁾	8,022	29,264	67,180	11,010	35,772

1) 신고인원 기준

2) 국세청은 2020년 귀속분부터 국내주식과 해외주식간 양도소득을 통산한 소득에 대해 세액이 계산되므로 세액을 별도로 분리가 곤란하여 양도차익으로 통계를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이 요청하는 자료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

1)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 현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제3항⁸⁷⁾에 따라 제출된 「주권 명의개서 명세서」⁸⁸⁾를 활용하여 국외주식 등 양도소득세 신고안내 및 미신고·과소신고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해당 자료만으로는 국외주식 취득가액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외주식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 세원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국내주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국외주식등 거래자료를 확보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48

8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1. 국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 등의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명의개서 또는 변경에 관한 확인업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자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투자중개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가. 주식

나. 출자지분

다. 공채

라. 사채

마. 채권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또는 같은 법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

사.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등

2. 국내에서 투자자로부터 위탁받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8호에 따른 외화증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다시 위탁하는 위탁자

88) 명의개서(名義改書)란 주권의 양도·상속·증여·질권설정 등으로 주주의 지위가 변동될 때, 그 권리관계를 회사에 대항하기 위해 회사의 주주명부에 주주의 성명·주소 등을 변경 기재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주권 명의개서 명세서」는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해 주권의 명의 변경 사실을 회사가 주주명부에 기재하고 그 과정을 정리한 문서를 말하며, 통상 증권 발행회사,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사 실무에서 사용됨

14.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을 조정(정부안)

현 행	개정안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제17조) ○ 배당소득 계산 시 배당가산액 합산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율을 곱한 금액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u>10%</u> * 현행 법인세 최저세율(9%)을 기준으로 가산을 산정 ($\frac{9\%}{1-9\%} \approx 9.9\%$)	☐ 배당가산을 조정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u>11%</u> *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법인세 최저세율(10%)을 기준으로 가산을 산정 ($\frac{10\%}{1-10\%} \approx 11.1\%$)
☐ 배당세액공제(제56조) ○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배당가산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배당가산액 공제	☐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경과조치(개정안 부칙 제14조)	☐ 법 시행 전 지급받은 배당소득의 소득금액 계산은 종전 규정에 따름

*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5)

☐ 개정안은 정부가 함께 제출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56호)의 의결을 전제로 법인세 최저세율이 현행 9%에서 10%로 1%p 인상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배당가산율을 1%p 상향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하려는 것임.

☐ 현행 「소득세법」⁸⁹⁾은 내국법인으로부터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89)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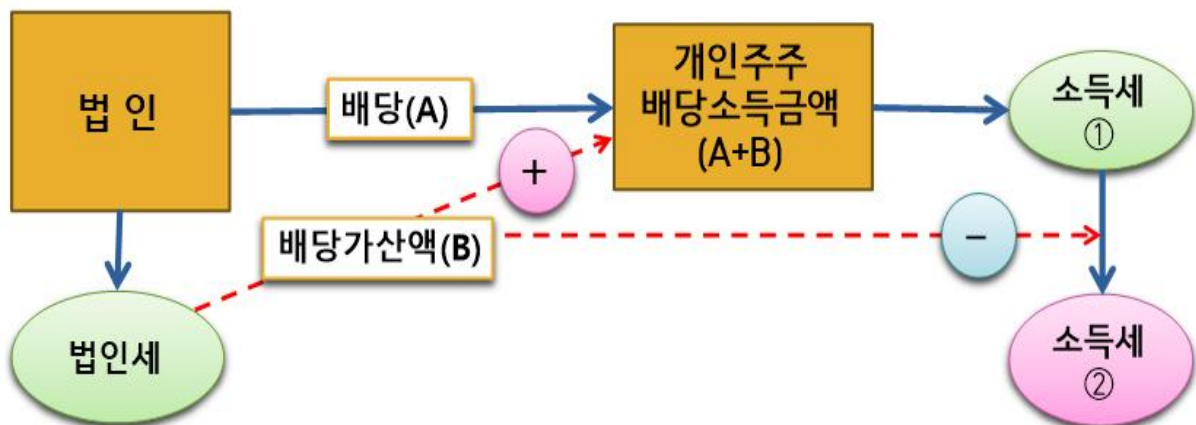
1. ~ 7. (생략)

제56조(배당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가 적용되는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⁹⁰⁾에 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중과세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배당소득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하는 제도(Gross-up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동 제도는 “특정 주주의 배당소득분에 해당하는 법인차원의 당기순이익을 계산한 후, 이에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배당가산액)”을 해당 주주의 소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소득세액을 계산한 후, 배당가산액을 소득세액에서 세액공제하는 방식으로 배당소득 이중과세 문제를 조정함.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Gross-up) 제도]



자료: 기획재정부

□ 이 때 “배당가산액”이란 법인의 법인세 중 주주가 배당받은 배당소득분에 해당하는 법인세 금액을 의미하는데,
주주에 대한 배당은 법인의 당기순이익 중 법인세를 제하고 남은 이익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여, 특정 주주의 배당소득에 $[1/(1-\text{법인세율})]$ 을 곱하여 해당주주의 배당소득분에 해당하

90)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에 한하며, 구체적으로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③ 의제배당, ④ 「법인세법」에 의해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을 의미함.

는 법인의 당기순이익을 역산하고, 이에 법인세율을 곱함으로써 법인세 중 해당주주의 배당소득분에 해당하는 법인세 금액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함.

[배당가산액 계산식]

$$\left[\text{배당소득(A)} \times \frac{1}{(1 - \text{법인세율})} \right] \times \text{법인세율}$$

이 때 적용하는 법인세율은 가장 낮은 법인세율 수준이자 가장 많은 법인에 적용되는 세율인 최저 법인세율을 적용⁹¹⁾하는데, 현행 최저 법인세율인 9%를 위 산식에 대입하면 배당가산율은 약 9.9%로 계산되고, 이를 반영한 현행 「소득세법」 제17조⁹²⁾는 법인으로부터의 배당소득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가산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2022년 세법개정 전 법인세 최저세율이 10%일 때 배당가산율은 약 11.1%로 계산되고, 舊 「소득세법」 제17조⁹³⁾는 배당가산액을 배당소득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하였음.

91) 이중과세의 완전조정을 위해서는 실효법인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실효법인세율을 적용하기 곤란하여 가장 많은 법인에 적용되는 최저세율을 적용하여 이중과세를 일부 조정하고 있음.

9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 7. (생략)

93) 舊, 「소득세법」 (법률 제18578호, 2021. 12. 8., 일부개정)

제17조(배당소득)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2009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의 배당소득분은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따라서, 개정안은 법인세 최저세율이 10%로 인상되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을 종전(법인세율 인하 전)과 같은 수준으로 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법인세 최저세율의 인상 여부 및 인상폭에 따라 함께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 의 처
02)6788-5161

15.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가. 제도 개요

□ 현행법 제57조의²⁹⁴⁾는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이 중 간접투자회사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⁹⁵⁾의 개념 및 설립형태에 따라 크게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으로 구분할 수 있음.

펀드의 과세체계를 살펴보면, 펀드-투자자 간 이중과세 해소를 위하여 펀드를 납세주체에서 제외함으로써 펀드 단계에서는 과세를 하지 않고, 투자자 단계에서 과세를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득금액이 펀드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소득이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규

94) 「소득세법」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 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일 것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다.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2. 간접투자회사등이 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같은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을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95) 일반적으로 ‘펀드’로 불리며, 펀드와 집합투자기구는 동일한 것으로 봄

정96)하여 펀드에 대한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있음.

한편, 투자자 단계에서 과세 시 「소득세법」 97)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펀드로부터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투자회사와 투자신탁의 비교]

구 분	투자회사(회사형 펀드)	투자신탁(신탁형 펀드)
설립 형태	주식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예정된 판매 회사에 의하여 발기 설립되어 모집)	신탁계약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 간의 신탁계약에 의하여 생성)
발행 증권	주권(주식)	수익증권
투자자 지위	주주	수익자
구조적 감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된 감독이사가 감시	신탁업자가 운용행위를 감시
설립 절차	사전에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후 모집	일반적으로 자금 모집 후 감독기관 신고
설립 비용	설립관련 상법에 준하는 등기업무 및 법인설립과 관련한 등록세 등 부담	설립과 관련된 비용이 소요되지 않음
펀드 과세 체계	펀드가 배당가능 이익을 90% 이상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경우 배당 소득금액 공제를 적용하여 과세 면제 (「법인세법」 제51조의2)	투자신탁을 별도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납세 주체에서 제외(도관 취급)하여 과세 면제
소득에 대한 세제	소득구분은 배당소득 <u>소득자가 법인인 경우 원천징수 없음</u>	소득구분은 배당소득 <u>소득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원천징수</u> (단, 금융회사의 경우 제외)98) 연 1회 결산 및 원천징수 의무

자료: 2025 금융상품과 세금, 김용빈 외 2인, p.368

96) 「소득세법」

제155조의3(집합투자기구의 원천징수 특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그 소득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소득금액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시점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97)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2005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는데, 이는 거주자가 직접투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7조⁹⁹⁾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국제적 이중과세를 제거할 수 있으나, 펀드를 통해 해외금융상품 등에 투자하는 경우 펀드 단계와 투자자 단계에서 모두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지 못함에 따라¹⁰⁰⁾ 발생하는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음.

98)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99)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text{공제한도금액} = A \times \frac{B}{C}$$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

B: 국외원천소득(「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세액감면 또는 면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또는 면제 대상 국외원천소득에 세액감면 또는 면제 비율을 곱한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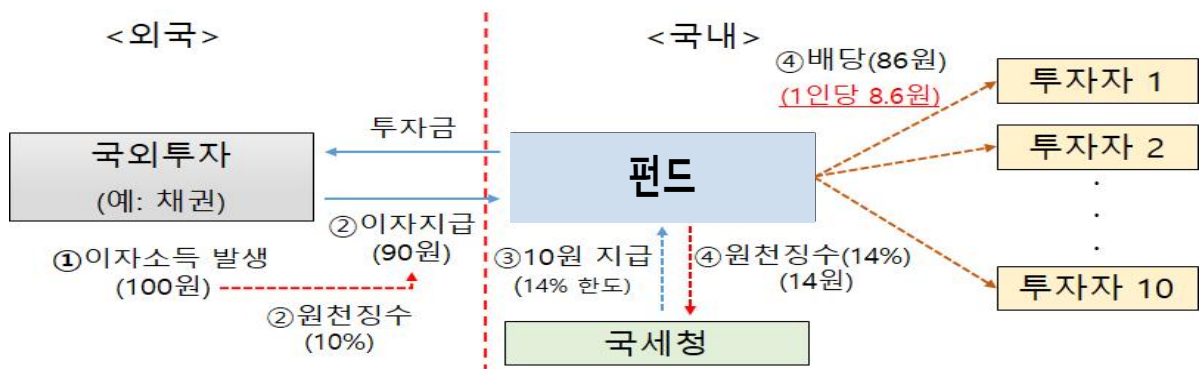
100) ① 펀드 단계에서는 펀드가 납부할 법인세액이 없어(투자신탁의 경우 법인세법상 실체가 없는 도관으로서 법인세 납부의무가 없고, 투자회사의 경우 투자자에게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을 하면 전액 배당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게 되므로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됨)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불가능하고, ② 투자자 단계에서는 외국세액의 납부 주체는 펀드로서 투자자가 아니므로 투자자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불가능하였음. 2022년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기획재정부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구분	시행 시기	방식
방식 I	2006~2024	펀드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을 선환급 받아 세전소득 환원 후 투자자 소득 분배 시 원천징수
방식 II	-101)	국세청의 환급절차 없이 펀드가 배당 시 국내와 외국 세율 차이만큼 투자자별 '세전소득'을 고려하여 원천징수
방식 III	2025~	국세청의 환급절차 없이 펀드가 배당 시 국내와 외국 세율 차이만큼 투자자별 '세후소득'을 고려하여 원천징수

투자자의 펀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식과 관련하여 방식 I 은 펀드의 해외소득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을 투자자별로 공제하는 것이 아니고, 펀드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을 선환급(국내원천 징수세율 14% 한도)받아 세전소득으로 환원 후 투자자에게 소득을 분배 시 원천징수하는 방식이었음.

[방식 I 외국납부세액공제 예시]



주: 외국 이자소득세율: 10%, 국내 배당소득세율 14%, 이익의 100% 배당 가정
자료: 기획재정부

방식 I 에 의하면, 외국에서 이자소득 100원이 발생하여 10%를 원천징수하고 90원을 펀드에 송금을 하는 경우, 소득발생 사업연도

101) 2021년 세법 개정 당시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부터로 설정하였으나, 이후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공포 후 시행 전 법률이 방식III으로 개정되어, 실제로는 시행되지 못하였음

과세표준 신고 시 국세청은 외국납부세액 10원을 환급함. 이후, 국내에서 펀드가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세 14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86원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됨으로써 투자자는 국내세율 14%로 과세됨.

그러나 방식 I 에 대하여, 국외원천소득의 국내 과세여부와 무관하게 외국납부세액을 미리 환급함에 따라 국고로 외국납부세액을 지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¹⁰²⁾ 2단계 절차(先 공제 또는 환급→後 원천징수)가 번거로워 이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따른 대응으로 간접투자회사·투자신탁 등이 거주자에 소득을 지급할 때, 국내세율을 적용한 세액에서 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과의 차이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식 II를 규정하는 개정안이 2021년 12월 의결되었음.¹⁰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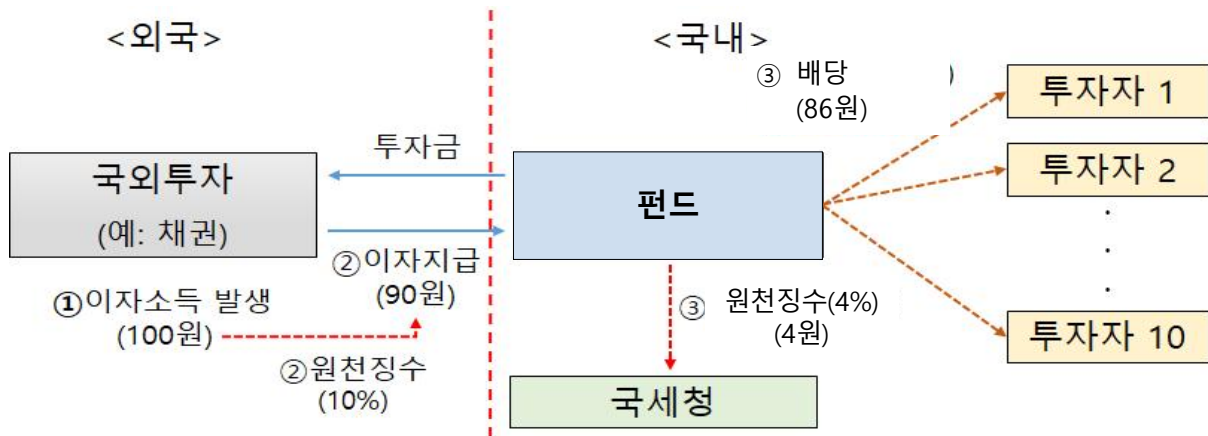
102) 면세 국내법인은 국내과세가 없음에도 정부가 외국납부세액을 지원하거나, ISA 계좌(국내세율 9%) 및 연금계좌 내 펀드를 통해 해외투자하는 경우 정부가 외국 납부세액을 일부 보전하는 결과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음. 기획재정부 자료

103)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⑤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제5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간접투자자의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방식 II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예시]



주: 외국 이자소득세율: 10%, 국내 배당소득세율 14%, 이익의 100% 배당 가정
 자료: 기획재정부

투자신탁이 거주자에 지급하는 배당으로서 위 그림과 동일하게 외국에서 이자소득 100원이 발생하여 10%를 원천징수하고 90원을 펀드에 송금을 하게 되면, 국세청의 환급절차 없이 펀드가 배당 시 국내와 외국 세율 차이(4%=14%-10%)만큼만 4원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86원을 투자자에게 지급하게 됨으로써 투자자는 국내세율 14%로 과세됨.

그러나 방식 II에 따를 때, 금융기관은 투자자별 펀드 소득 발생 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차액을 원천징수하게 되는데¹⁰⁴⁾,

방식 II

$$\text{원천징수세액} = (\text{투자자별 세전소득} \times \text{원천징수세율}) - (\text{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

104) 참고

방식 I은 펀드의 해외소득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자별로 공제되는 것이 아니고, 펀드가 국세청으로부터 외국납부세액을 선환급(국내원천징수세율 14% 한도) 받아 세전소득으로 환원 후 투자자에게 소득 분배, 원천징수

이를 위해서는 개별 펀드·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과 동 세액납부 전 소득이 계산되어야 함. 그러나 복수 국가·자산에 분산투자되고 투자자 변동 및 투자자산 배당 등이 수시로 발생하는 펀드의 성격상 업계는 투자자별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세전 기준가격을 만드는 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도입된 방식 Ⅲ은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한 원천징수 계산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펀드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펀드 세후 기준가격으로 계산하되, 펀드 세전 기준가 및 실제 외국납부세액으로 계산했을 때(방식Ⅱ)와 동일한 원천징수세액이 나오도록 외국납부세액 감액비율¹⁰⁵⁾을 설정·적용하여, 조정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였음.

105)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은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 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작은 경우

$$\frac{\text{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text{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 \text{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1 - \text{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III(현행, 2025년~)

$$\text{원천징수세액} = (\text{투자자별 세후소득} \times \text{원천징수세율}) - (\text{투자자별 조정외국납부세액})$$

이를 고려하여 현행법은 ①(국내 $\geq$ 외국원천징수세율) 방식Ⅱ와 방식Ⅲ이 각각 세전 과세표준(100)과 세후 과세표준(90)으로 다른 기준을 택하더라도 방식Ⅱ와 방식Ⅲ의 원천징수세액이 같게 되도록 방식Ⅲ의 외국납부세액(10)에 조정비율(1-0.14)을 곱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방식Ⅱ와 방식Ⅲ 모두 원천징수세액은 4가 될 수 있도록 시행령상에 규정하였음.

[원천징수세액 산출 방식 비교(국내 $\geq$ 외국원천징수세율)]

구분	방식Ⅱ(세전소득 기준)	방식Ⅲ(현행, 세후소득 기준)
해외 배당금 (세전)	100	100
㉠ 외국납부세액 (10%가정)	$\Delta 10$	$\Delta 10$
과세표준	(세전 과세표준) 100	(세후 과세표준) 90
㉡ 국내배당소득세액 (14%가정)	$\Delta 14 (= 100 \times 0.14)$	$\Delta 12.6 (= 90 \times 0.14)$
㉢ 외국납부세액공제	10	$8.6 [= 10 \times (1 - 0.14)]$ (투자자별 조정외국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 (=㉡+㉢)	$\Delta 4$	$\Delta 4$
총 부담세액 (=㉠+㉡+㉢)	$\Delta 14$	$\Delta 14$

②(국내 $<$ 외국원천징수세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의 방식으로 조정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하여 결과적으로 방식Ⅱ와 방식Ⅲ 모두 원천징수세액은 0이 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음.

[원천징수세액 산출 방식 비교(국내 < 외국원천징수세율)]

구분	방식Ⅱ(세전소득 기준)	방식Ⅲ(현행, 세후소득 기준)
해외 배당금 (세전)	100	100
㉠ 외국납부세액 (20%가정)	$\Delta 20$	$\Delta 20$
과세표준	(세전 과세표준) 100	(세후 과세표준) 80
㉡ 국내배당소득세액 (14%가정)	$\Delta 14(=100 \times 0.14)$	$\Delta 11.2(=80 \times 0.14)$
㉢ 외국납부세액공제	-	$11.2[=20 \times (0.7 - 0.14)]$ (투자자별 조정외국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 (=㉡+㉢)	0 ($\because$ 원천징수세액<외국법인세액)	0
총 부담세액 (=㉠+㉡+㉢)	$\Delta 20$	$\Delta 20$

또한, 현행법은 위 내용과 함께 원천징수 시 공제되는 조정외국납부세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음.¹⁰⁶⁾

¹⁰⁶⁾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⑦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이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날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해당 소득에 대한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증권의 전부 환매 또는 전부 양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제5항제2호의 금액이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나. 간접투자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식 변경(정부안, 김영진의원안)

현 행	개정안
□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57의2) ○ 종합과세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 소득 및 공제금액 계산방식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이 포함된 경우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 「자본시장법」에 따른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 <u>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u> ○ <u>공제한도</u> - $A \times \frac{B}{C}$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u>종합소득산출세액</u> B: <u>간접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u> * <u>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에 한정</u> C: <u>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u>	□ 공제금액 적용 방식의 변경 - (현행과 같음) - <u>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u> (김영진의원안) 현행과 같음 (정부안)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김영진의원안) - $A \times \frac{B}{C}$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u>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산출세액</u> B: <u>간접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u> * <u>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에 한정</u> C: <u>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u> ○ (정부안) <삭 제>

* 김영진의원안 2025. 8. 22. 발의(의안번호 12309),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4)

[현행법상 원천징수단계 및 종합소득 신고단계에서의 원천징수금액
등에 대한 계산 방식]

구분	방식Ⅲ(현행)
원천징수 신고 단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 : ㉓-㉔ ㉓(이하 ‘기초징수액’):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¹⁾ × 원천징수세율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중 간접투자회사등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소득 ㉔ (이하 ‘원천징수 단계 공제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text{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107)} \times (\text{① 또는 ②})^{108)}$ ①:(국내 원천징수세율 < 외국원천징수세율) $\frac{\text{국내원천징수세율}}{\text{외국원천징수세율}} - \text{국내원천징수세율}$ ②:(국내 원징세율 ≥ 외국원징세율) $1 - \text{국내 원징세율}$ ※㉔의 한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 14%¹⁰⁹⁾
종합소득 신고 단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㉕): 간접투자외국법인 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text{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times (\text{① 또는 ②})^{110)}$ ①:(국내 원천징수세율 < 외국원천징수세율) $\frac{\text{국내원천징수세율}}{\text{외국원천징수세율}} - \text{종합소득 한계세율}$ ②:(국내 원징세율 ≥ 외국원징세율) $1 - \text{종합소득 한계세율}$ ㉕의 한도 : ㉓ × $\frac{\text{㉔}}{\text{㉕}}$ ㉓: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㉔: 간접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 *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에 한정 ㉕: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107)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57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이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 및 제189조의2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한 경우 간접투자회사등이 거주자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응하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 외의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日)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text{거주자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A \times B$$

A: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B: 거주자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다)

2. 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text{거주자의 일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A \times B \times C$$

A: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일별 좌당 또는 주당 외국법인세액(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총 외국법인세액을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B: 간접투자회사등의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간접투자회사등이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말한다)

C: 거주자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또는 주식수의 비율(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할 당시 거주자가 보유하고 있던 좌수 또는 주식수를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한 총 좌수 또는 총 주식수로 나눈 값을 말한다)

108)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① 법 제129조제5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시 차감하는 금액은 제117조의2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제117조의2제4항에 따라 계산한 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작은 경우

$$\frac{\text{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text{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 \text{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1 - \text{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개정안은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개인투자자에 대한 간접투자 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이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 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정부안은 현행 방식에 따를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 중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한도 등(공제한도 및 공제한도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는 이월공제금액, 이하 “공제한도등”)의 계산이 어려우므로, “원천징수 단계 공제금액”을 환산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 중 공제되는 금액을 계산하는 데 활용하도록 방식(방식Ⅳ)을 개정하려는 것임.

현행법상 원천징수는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함으로써

109) 배당소득에 대한 기본원천징수세율

110)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② 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매도 시의 과세표준기준가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에서 제26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집합투자기금으로부터의 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손익을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으로서 과세표준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80조제4항 본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매수 시(매수 후 결산·분배가 있었던 경우에는 직전 결산·분배 직후를 말한다)의 과세표준기준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2. 실제 매도가격에서 실제 매수가격을 뺀 후 직전 결산·분배 시 발생한 과세되지 않은 투자자별 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

③ 법 제5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	--

2.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1	-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	--

과세가 종결되는 완납적 원천징수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지 않고 따로 정산과정을 거쳐야하는 예납적 원천징수로 구분됨.

또한 현행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는, 종합소득 신고단계에서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따른 공제한도등을 개인투자자별로 각각 계산·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개인이 종합소득 신고 시 현행 규정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및 공제한도등을 직접 계산하고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 따른 공제한도 계산식의 국외원천소득(§57의2의 B)¹¹¹⁾이 투자자에게 실제 지급(분배)¹¹²⁾되는 소득과 차이가 있어, 공제한도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111) 「소득세법」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③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text{공제한도금액} = A \times \frac{B}{C}$$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B: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합계액

C: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112) 분배는 간접투자회사등이 투자회사에 실제로 소득을 지급하는 단계를 의미하며, 배분은 간접투자회사등이 얻은 해외 투자소득을 투자회사에 이론적으로 할당하는 단계를 의미함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따른 개인투자자 공제한도등 계산의 어려움]

간접투자외납세액 공제 적용 예시(국내원천세율:14%. 한계세율:20%)									
단계	구분	국외원천소득(국외세율14%)			분배 (C)	기초징수액 (N)	원천징수 단계 공제 금액(D) =A*0.86	공제 한도 (E) =C*0.14	이월 공제액 (F) =D-E(≥0)
		세전	외납세액 (A)	세후(배분) (B)					
원천징수	펀드1	1,000	140	860	300	42	120.4	42	78.4
	펀드2	500	70	430	200	28	60.2	28	32.2
(개정 전)									
단계	구분				산출 세액(J) =I*0.2	공제 금액(K) =(A ₁ +A ₂)*(1-0.2)	공제 한도 (L)	이월 공제액 (M) =K-L(≥0)	
		국내 소득 (G)	세후(분배) (H) =C ₁ +C ₂	과세 표준(I) =G+H					
종소 신고	합산	1,000	500	1,500	300	168	?	?	

주1: 펀드1,2에서의 원천징수금액은 0임

주2: 분배(C)의 값이 300으로 분배된 배경에는 현행법 시행령 제17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르는 거주자의 간접투자회사등에 대한 보유 좌수 및 주식수로부터 그 분배 비율이 결정된 것이 아닌, 양도차손등의 발생으로 인해 분배되는 값이 작아진 것으로 보임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재가공

□ 현행법은 투자자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수령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종전 국세청이 외국납부세액을 환급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①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값(기초징수액)(N)에서 원천징수 단계 공제금액(D)을 뺀 값을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¹³⁾ 다만, D는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의 14%를 한도(E)로 하고 있음.¹¹⁴⁾

113)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⑤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제5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114)⑥ 제5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은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 제1항제2호나목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 예납적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지 않았을 경우, 종합소득신고 단계에서는 원천징수 당시와 동일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소득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K)을 계산하되 그 한도(L)는 종합소득산출세액 중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외국납부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이 전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으로 설정하고 있음.¹¹⁵⁾

그러나, 공제한도등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개인은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국외원천소득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임.¹¹⁶⁾ 이는 종합소득 신고 시점에 공제한도등의 계산을 어렵게 하는 문제를 초래함.

115) 「소득세법」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③ 제1항에 따라 종합 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초과 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text{공제한도금액} = A \times \frac{B}{C}$$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B: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자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합계액

C: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116) 예시된 바와 같이 국외원천소득의 구분이 2개의 펀드에 그치고 1차례의 양도차손만이 발생할 경우 공제한도의 계산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나, 세율이 상이한 다수의 국가에 다수의 펀드를 통해서 분배받은 소득이 발생할 경우 공제한도 계산의 복잡성은 더욱 커짐.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따른 공제한도 도입 취지의 불합치 예시]

공제한도 계산 사례($B/D > 1$ 인 경우)

구분	국외원천소득(배당 등)			분배 (D) (양도차손3))	국내 소득	과세 표준	산출 세액	공제 한도
	세전	외납세액	세후(배분) (B)					
금액	1,000	100	900	300 (△600)	300	600	120 ¹⁾	180 ²⁾

* 주 1) 세율 20% 가정(소득세 실효세율은 약 17% 수준)

2) 산출세액 × 국외원천세후소득 / 과세표준 = $120 \times 900 / 600 = 180$

3) 국외주식 투자로 인한 양도차손(△600)에 따라 실제 분배 규모가 축소되는 경우

주1: 양도차손의 존재 외에도, ①다수의 금융사를 통해 해외간접투자하는 개인의 경우 위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다는 점, ②세후국외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규정으로 인해 공제한도를 둔 취지를 퇴색시키는 점이 문제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 한편, 위 사례와 같이 간접투자회사등이 국외원천소득을 국외주식에 투자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개인투자자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분배받은 소득(D)이 현행법상 그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의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B)¹¹⁷⁾에 비해 작아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 때,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에 대한 공제한도는 실제 공제하는 금액에 비해 더 커지게 되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구성하는 펀드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 국내세율을 한도로 공제하겠다는 공제한도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측면¹¹⁸⁾이 있음.

117) 「소득세법」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③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항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의 금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할 수 있다.

$$\text{공제한도금액} = A \times \frac{B}{C}$$

A: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B: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자의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합계액

C: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118) 기획재정부 의견

□ 이에 개정안은 “원천징수 단계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환산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 중 공제되는 금액을 계산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정부안은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원천징수 단계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이와 같이 규정할 경우 별도의 공제한도를 둘 필요성이 없으므로, 공제한도와 관련된 현행 규정은 삭제하려는 것임.

특히, 소득세법은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원천징수 단계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환산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¹¹⁹⁾ 이에 대해 정부는 원천징수의 공제율과 종합소득단계의 공제율 차이에 관한 계산을 단순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임.

이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따른 공제한도등의 계산이 복잡하게 이루어지고, 현행과 같이 세후국외소득을 기준으로 한 공제한도 산식을 따를 경우, 개인투자자에게 실제 분배되는 소득과 공제액 한도가 대응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119) 예를 들어 종합소득대상자(t 연도)에서 분리과세대상자(t+1 연도)로 변경되는 경우, 종합소득 단계에서의 외납세액 공제금액(t 연도)을 각 증권사에 통지하여야 하나, 현행법에 따를 경우 통지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움.

[개정안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산출 방식 비교]

구분	방식Ⅲ(현행)	방식Ⅳ(개정안)
원천징수신고단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 : ㉓-㉔ ㉓: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¹⁾ × 원천징수세율(이하 ‘원징세율’)(이하 ‘기초징수액’)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중 간접투자회사등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소득 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원천징수 단계 공제금액’)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① 또는 ②) ①:(국내 원징세율 < 외국원징세율) $\frac{\text{국내원징세율}}{\text{외국원징세율}} - \text{국내원징세율}$ ②:(국내 원징세율 ≥ 외국원징세율) 1- 국내 원징세율 ※㉔의 한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 14%	현행과 같음 ※ 단, 추후 다.에서 논의될 바와 같이 연금계좌로부터 수령한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규정하여야 하므로, ㉔의 한도를 별도의 용어로서 ‘배당소득공제한도금액’등으로 정하였음
종합소득신고단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㉕): 간접투자외국법인 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① 또는 ②) ①:(국내 원징세율 < 외국원징세율) $\frac{\text{국내원징세율}}{\text{외국원징세율}} - \text{종합소득 한계세율}$ ②:(국내 원징세율 ≥ 외국원징세율) 1- 종합소득 한계세율 ㉕의 한도 : ㉓ × $\frac{\text{㉔}}{\text{㉕}}$ ㉓: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㉕): ㉔의 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원천징수 단계의 공제율과 종합소득 단계의 공제율 차이는 계산을 단순화 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예정 한도: 삭제 (“원천징수 단계 공제금액” 활용)

구분	방식Ⅲ(현행)	방식Ⅳ(개정안)
	㉠: 간접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 *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에 한정 ㉡: 해당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	

- 다만, 현행법에 따라 “원천징수 단계 공제금액”을 활용하여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상 규정된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 표준에 대한 한계세율”에 대한 의미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은 한계세율에 대한 정의가 되어있지 않음.

따라서 법률 또는 시행령 상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상의 한계세율의 의미를 규정하거나, 별도의 조정계수를 두어 “원천징수 단계 공제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환산하는 산식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¹²⁰⁾

120) 정부는 이에 대해 현행 제도의 취지를 살리되 복잡한 한계세율 개념을 단순화하여, 각 개인이 위치하는 과표구간에 해당하는 세율로 조정하기 위한 계수를 시행령에 반영할 것이라는 입장임.

[공제금액(K') 계산을 단순화 위한 '한계세율'의 의미 명확화 필요 이유]

① (국내원징세율 $\geq$ 외국원징세율)

현행 "원천징수 단계 공제금액(A)" 계산 방식

=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times$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현행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따른 공제하는 금액(B)" 계산 방식

=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times$ (1-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therefore$ A를 활용하여 B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A \times \frac{1 - \text{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1 - \text{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B$$

$\therefore$ 한계세율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② (국내원징세율 < 외국원징세율)

현행 "원천징수 단계 공제금액(A)" 계산 방식

=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times$

$\frac{\text{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text{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 \text{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현행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따른 공제하는 금액(B)" 계산 방식

=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times$

$\frac{\text{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text{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 \frac{\text{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text{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

$\therefore$ A를 활용하여 B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A \times \frac{\frac{\text{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text{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 \frac{\text{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text{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대한 한계세율}}}{\frac{\text{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text{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 - \text{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

= B

$\therefore$ 한계세율에 대한 정의가 필요함

- 한편, 김영진의원안은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따른 공제금액의 한도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의 범주에 대한 개정 없이, 공제 한도를 종합소득산출세액 및 퇴직소득산출세액 중 전체 종합소득금액에

서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해당 소득에 대하여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이 납부된 경우)의 비율만큼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제한도 등 공제방식의 개편과는 무관하게 연금계좌 인출
소득을 외납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현행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앞에서 기술한 공제한도등의 계산의 어려움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정부안과 같이 공제한도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8

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
(정부안, 김영진의원안)

현 행	개정안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57의2) ○ 종합과세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이 포함된 경우 - 종합소득금액 - <신 설>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신 설> □ 원천징수세율 (§129) ○ 종합과세 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 * 및 원천징수액 계산 방식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이 포함된 경우 ① 대상소득 : 배당소득 - 원천징수세액 : (간접투자회사소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원천징수세율)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 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신 설>	□ 공제 대상 소득 및 세액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 ○ 대상 소득에 퇴직소득금액 추가 - 퇴직소득금액 (정부안, 김영진의원안) ○ 대상 세액에 퇴직소득 산출세액 추가 - 퇴직소득 산출세액 (정부안, 김영진의원안) □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 (김영진의원안) -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소득

현 행	개정안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의 공제 한도 – 간접투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14% – <신 설>	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세액 계산 (정부안) ② 대상소득: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소득 중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으로 이자,연금,기타,퇴직소득 (정부안) – 원천징수세액: ①(연금계좌인출공제(이자,연금,기타,퇴직)소득× (이자,연금,기타,퇴직)원천징수세율) – ②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정부안) ① 연금계좌인출공제(이자,연금,기타,퇴직)소득× (이자,연금,기타,퇴직)원천징수세율

* 김영진의원안 2025. 8. 22. 발의(의안번호 12309),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4)

□ 개정안은 종합소득신고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가 허용되는 소득 및 세액의 범위에 퇴직소득금액과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추가하고, 원천징수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소득에 연금계좌¹²¹⁾

¹²¹⁾“연금계좌”란 연금저축계좌 또는 퇴직연금계좌를 말함.(「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퇴직연금계좌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형), 개인형 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IRP) 등으로 분류하며, 이 중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이직·퇴직 시 수령한 퇴직금을 적립·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2023년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인원은 321만 5천명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하였음. (통계청 보도자료, “2023 퇴직연금통계 결과, 2024.12.16.”)

소득 중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고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요건(이하 “간접투자외납요건”)을 갖춘 소득을 추가하여 연금계좌 소득 중 간접투자외납요건을 갖춘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종합소득신고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소득을 종합소득으로만 한정하고 있음.¹²²⁾ 또한, 현행법은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 중 간접투자외납요건을 갖춘 소득에 대해서 별도로 원천징수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중과세 논란이 제기되었음.¹²³⁾

이에 개정안은 종합소득신고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소득의 범위를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으로 확대하는 한편, 원천징수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소

122) 「소득세법」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 금액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간접투자회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일 것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같은 법제9조제19항제1호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 나.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 다. 「법인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
2. 간접투자회사등이 거주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른 외국법인세액(간접투자회사등이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발행하는 증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투자한 경우로서 그 다른 간접투자회사등이 납부한 같은 규정에 따른 외국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세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을 것

123) 특히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 계좌는 투자소득 수령 시기(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가 3~5%가 부과되므로, 연금계좌를 통해 해외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외국납부세액이 공제되지 않아 이중과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되었음.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계좌는 투자 소득 수령 시기(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 3~5%가 붙는다. 결국 연금계좌에서 미국 주식형 펀드에 투자했을 경우, 분배금을 받을 때 미국 정부에 원천징수당한 뒤 이를 연금으로 수령할 때 한국 정부에 또 연금소득세를 내기 때문에 세금을 총 2번 내게 되는 것이다.” 연합뉴스, 「연금계좌 해외주식 ETF 배당 이중과세 논란…정부 대책 논의」

조선일보, “연금 계좌에서 해외주식 ETF 투자했더니 이중과세 날벼락”

득을 현행 배당소득 중 간접투자외납요건을 갖춘 소득에 더하여,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 중 간접투자외납요건을 갖춘 소득”을
추가하려는 것임.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적용 소득의 확대)

- 개정안은 현행법 제57조의2와 관련하여, 현재 종합소득 및 종합소득산출
세액에서만 적용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소
득 중 간접투자외납요건을 갖춘 소득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그
적용 범위를 퇴직소득 및 퇴직소득 산출세액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사적연금과 관련하여 수령방식, 자금의 원천 및 소득 유
형을 구분하여 금액의 성격에 따라 분류과세(퇴직소득), 분리과세
(연금 및 기타소득) 또는 종합과세하고 있음.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의 구분]

소득 원천별 인출 순서		연금수령	연금외수령
①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	→	과세제외	과세제외
② 이연된 퇴직소득	→	연금소득 (10년 이하: 퇴직소득세의 70% 10년 초과: 60%)	퇴직소득
③ 과세대상 금액(①+②)			
①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	→ 1,500만원 이하	연금소득 (분리과세, 3~5%)	기타소득 (15%)
② 연금계좌 운용소득	→ 1,500만원 초과	연금소득 (종합과세, 6~45%)	기타소득 (15%)

* 舊 개인연금(舊 조특법 §86, ~'00년): 연금외수령은 이자소득으로 구분

□ 그러나 이연된 퇴직소득을 연금외수령¹²⁴⁾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되어 분류과세 되지만 현행법은 종합소득에 대해서만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어, 연금계좌 소득 중 간접투자외납요건을 갖춘 퇴직소득은 법 제57조의2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상황임.¹²⁵⁾

개정안은 종합소득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소득 및 세액에 퇴직소득 및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포함하여, 종전 포괄하지 못하였던 연금계좌 인출 시 이연퇴직소득 중 연금외수령하는 소득인 퇴직소득에 대해서도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124) 「소득세법」

제20조의3(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계좌[“연금저축”의 명칭으로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연금저축계좌”라 한다) 또는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좌(이하 “퇴직연금계좌”라 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경우의 그 연금
 - 가. 제146조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 나. 제59조의3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 다.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 라. 그 밖에 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되어 해당 금액에 대한 소득세가 이연(移延)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소득
3. 제2호에 따른 소득과 유사하고 연금 형태로 받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③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형태 등으로 인출”이란 연금계좌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인출하거나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이하 “연금수령”이라 하며, 연금수령 외의 인출은 “연금외수령”이라 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퇴직소득을 제2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해외이주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을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금수령으로 본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서 직접 인출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연퇴직소득”이라 한다)이 연금계좌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과세기간 개시일(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로 한다) 현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연금수령한도”라 한다) 이내에서 인출할 것. 이 경우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출한 금액은 인출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25) 이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소득 및 세액이 종합소득 및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 단계에서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 중 간접투자외납요건을 갖춘 소득에 대해서도 별도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기인함.

② (연금계좌소득 중 간접투자외납요건을 갖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규정 방식]

구분	방식Ⅲ(현행)	방식Ⅳ(개정안)
원천징수 단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액 : ㉠-㉡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¹⁾ × 원천징수세율(이하 ‘원징세율’)(이하 ‘기초징수액’)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중 간접투자회사등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소득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원천징수 단계 공제금액’)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① 또는 ②) ①:(국내 원징세율 < 외국원징세율) $\frac{\text{국내원징세율}}{\text{외국원징세율}} - \text{국내원징세율}$ ②:(국내 원징세율 ≥ 외국원징세율) 1- 국내 원징세율 ※㉡의 한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 14%	현행과 같음 ※㉡의 한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 14%)(“배당소득공제 한도금액”)
	(신 설)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 원천징수세액 이자소득 : ㉢₁-㉢₁ 연금소득 : ㉢₂-㉢₂ 기타소득 : ㉢₃-㉢₃ 퇴직소득 : ㉢₄-㉢₄ ㉢_{1,2,3,4}: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중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이자, 연금, 기타, 퇴직소득(이

구분	방식Ⅲ(현행)	방식Ⅳ(개정안)
		하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 소득 별 원천징수세율 ㉠_{1,2,3,4}: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고 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원천징수 단계 공제금액’) ※ 현행 규정과 유사하게 시행령 제정 예정 ㉠_{1,2,3,4}의 한도: ㉠_{1,2,3,4}

□ 개정안은 연금계좌 소득 중 간접투자외납요건을 갖춘 소득 또한 원천징수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대상임을 규정하여, 연금계좌 소득 중 간접투자외납요건을 갖춘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가 적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법은 원천징수 단계에서 배당소득 중 간접투자외납조건을 갖춘 소득에 대해서만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¹²⁶⁾

126)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⑤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제57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제127조제1항제2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제57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1항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하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제1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법인세법」 제9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5. 연금소득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제24호 또는 제27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

이로 인해, 원천징수 단계에서 연금계좌 소득 중 간접투자외납조건을 갖춘 소득은 별도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¹²⁷⁾

□ 또한, 개정안에 따른 경우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 중 간접투자외납조건을 갖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특례가 적용되어야만, 종합소득신고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따르는 공제금액의 정확한 계산이 가능해짐. 현행법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¹²⁸⁾ 시행령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과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의 대소를 비교하여 공제되는 금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방식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

은 제외한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료

9. 삭제

127) 현행법 상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은 퇴직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특례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128) 「소득세법」

제5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가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이 차감된 가격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9조에서 “세후기준가격”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간접투자회사등의 증권의 매도에 따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세후기준가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③ 법 제5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제1항에 따른 거주자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값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29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적용된 외국 원천징수세율보다 작은 경우

제하는 금액에 대한 계산은 원천징수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특례가 적용된 것을 전제로 그 산식이 도입되어 있으므로,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 중 간접투자외납조건을 갖춘 소득이 원천징수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종합소득신고 단계에서 계산된 공제금액이 정확히 산출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함.

- 또한, 개정안은 “원천징수 단계 공제금액”을 환산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에 따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므로, 개정안에 따를 경우,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 중 간접투자외납요건을 갖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단계에서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의 규정은 필수적임.

이에 개정안은 원천징수 단계에서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연금, 기타, 퇴직, 이자소득¹²⁹⁾ 중 간접투자외납요건을 갖춘 소득(이하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에 대해서도 각각 원천징수세액 및 그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을 규정하여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하는 모든 소득이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천징수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구체적으로 개정안은 원천징수 단계에서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 중 이자, 퇴직, 연금,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값에서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단계 공제금액”을 뺀 값을 원천징수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원천징수 단계 공제금액”의 한도

129) 이는 간접투자 소득지급 시점이 아닌 연금의 소득 인출시점에 따라서 원천징수 되는 연금계좌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상기된 바와 같이, 수령 방법 및 소득의 원천에 따라서 그 소득의 특성이 구분됨.

는 원천징수 단계에서 연금계좌인출공제소득 중 이자, 퇴직, 연금,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값(이하 “연금계좌인출공제한도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개정안은 연금계좌인출공제한도금액에 대응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단계 공제금액”의 한도는 “배당소득공제한도금액”으로 그 용어를 신설하고 있음.

[연금계좌 인출 소득의 원천징수 규정 신설 효과]

구분	계좌	투자 구조도	간접투자 외납공제
현행	일반 계좌		가능
	연금 계좌		불가
개정안	연금 계좌		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식 규정]

개 정 안
☐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 (대상)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에 간접투자 소득이 포함된 경우 ○ (공제방식) 공제적립액 누적 후 연금계좌 인출 등으로 발생하는 세액에 공제 적용 - (공제액 적립)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발생 시 공제적립액 계산* 및 누적 합산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발생시마다 외국납부세율을 14%로, 국내세율을 9%로 간주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적립액으로 누적 관리 ** 공제적립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times (\frac{9\%}{14\%} - 9\%)$ - (공제적용) 연금계좌 인출 또는 계좌이전*으로 세액 발생 시마다 해당 세액에서 공제적립액을 차감 * 근로자 퇴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계좌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주1: 정부는 해당 내용과 관련된 내용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할 것이라는 입장임. 자료: 2025년 세제개편안

- ☐ 연금계좌 소득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방식과 관련하여, 정부는 연금계좌의 상품 특성을 고려하여 이른바 ‘크레딧’ 형태로 연금계좌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것임을 밝혔다. 이는 연금계좌의 실제 과세는 인출 시점에 이루어지는 구조를 감안한 것으로,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시점과 국내 과세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임. 즉, 외국납부세액을 즉시 공제하지 않고 계좌 내에 적립해두었다가 인출 시점에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과세시기 불일치에 따른 왜곡을 방지

하려는 취지로 보임.

구체적으로, 정부는 연금계좌 운용단계에서는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발생 시 공제적립액을 계산 및 누적 합산한 후 연금계좌 인출¹³⁰⁾ 등으로 발생하는 세액에 대해서 해당 공제적립액을 차감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것으로 입장을 밝혔다.

-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 중 간접투자외납요건을 갖춘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의 적용례는 다음과 같음.

적용례
(정부안)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의 공제 및 연금계좌 인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용 : 2025년 1월 1일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연금계좌로 지급되고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의 공제방식에 대한 적용방식 변경 :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김영진의원안) 2025년 1월 1일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연금계좌로 지급된 소득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소득을 인출하는 경우부터 적용

정부안은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 중 간접투자외납요건을 갖춘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간접투자 회사등으로부터 연금계좌로 지급되고, 2026년 7월 1일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되는 소득에 대해서부터 적용하고,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의 적용방식 변경은 이 법

130) 또는 계좌이전(근로자 퇴직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계좌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로 이전하는 경우)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려는 것으로,

연금계좌에서 인출한 소득 중 간접투자외납요건을 갖춘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세액공제를 소급하여 적용하려는 것임. 이는 현행 방식(방식Ⅲ)이 2025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연금계좌 소득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소급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임.

이와 더불어 정부는 ISA 계좌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여 제도를 개선하였음.¹³¹⁾

- 그러나 연금계좌 소득 중 간접투자외납요건을 갖춘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는 개정안과 같이 소급조항을 두어 특례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을 통한 ISA계좌소득 중 간접투자외납요건을 갖춘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는 2025년 하반기부터의 ISA 계좌로부터의 간접투자 소득이 공제대상일 뿐,¹³²⁾ 2025년 상반기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혜택을 받지 못해 상품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³³⁾ 한편, 정부 추계에 따르면, ISA계좌에 대한 소급

1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1항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둘 이상의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간접투자회사등별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으로 하고, 외국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14로 하여 계산한다.

132) 부칙 [대통령령 제35349호, 2025. 2. 28.]

제12조(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17조의2제2항·제4항·제5항 및 제189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공제하거나 원천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하여는 제117조의2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적용 배제로 인한 계좌당 외국납부세액공제 손실액은 85원임.

[계좌 유형별 해외펀드 투자 현황]

(조 원, %)									
연도	국내	해 외							
		합계		일반		ISA		연금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규모	비중
2023	644.7	326.7	100.0	318.1	97.3	1.3	0.5	7.3	2.2
2022	555.9	296.4	100.0	288.7	97.4	1.0	0.3	6.7	2.3
2021	544.2	287.7	100.0	278.4	96.8	1.0	0.3	8.3	2.9
2020	483.4	236.8	100.0	230.2	97.2	0.4	0.2	6.2	2.6

‘24년 국세청이 지급한 해외펀드 등의 외국납부세액 先환급액 2,134억
 → 계좌별 해외펀드 투자비중에 단순 적용할 경우
 - 연금계좌 47.7억원, ISA계좌 4.2억원 (일반계좌는 2,076억원)

* 동 금액을 계좌 수로 나누면 계좌당 연금 460원, ISA 85원원의 이중과세 발생 가능

자료: 기획재정부

□ 개정안의 형식과 관련하여 정부안은 연금계좌 소득 중 간접투자외납요건을 갖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할 때 각각의 소득 특성을 구분하고 이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김영진의원안은 현행 조문을 일괄적으로 인용하는 방식으로 공제금액을 규정하고 있음. 이 경우 정부안과 같이 각 소득의 특성에 따라 그 계산방식을 나누어 규정하는 것이, 법률 규정의 명확성을 높여 납세자의 이해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8

133) 조선비즈 “ISA는 안되는데 연금계좌는 된다?...외국납부생개공제 소급적용 두고 ‘논란’”, 2025.8.17.

16.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정부안)

현 행	개정안
□ 거주자의 출국시 납세의무 (§118의9) ○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 출국*하는 거주자(국외전출자)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 ①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②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추가> * 양도소득세 상 대주주 기준과 동일 ○ 국외 전출세 과세대상 양도소득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 주권비상장법인의 주식 등 - 법인의 과점주주가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의 주식 등 - <신 설> □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등 (§118의10~118의18) ○ §118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 (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 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등	□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에 국외주식 포함 등 ○ 국외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 요건 제외 ②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단, 국외주식등의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 미적용 ○ 국외주식 등 포함 - <u>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u> □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의 범위 변화로 인한 용어 변경 ○ §118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 (이하 ‘국외전출자 주식등’) 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등 ○ (적용시기) 2027.1.1. 이후 출국분부터 적용

*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4)

□ 개정안은 국외전출세의 과세대상에 국외주식을 포함하되, 국외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을 미적용함으로써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국외전출세는 거주자가 이민 등으로 국외전출¹³⁴⁾하는 경우, 국외전출일에 국내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2016년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세법」에 반영되었음. 이후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① 납세대상에 부동산 주식을 추가하였고, ② 과세표준에 3억원을 기준으로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음.

개정안은 이에 더해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국외주식¹³⁵⁾을 포함하되,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인 경우에 한정하여 국외전출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국외주식에 대해서는 모든 주식에 대해 이를 과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현행법상 국외전출세의 과세표준과 같이 국외전출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조문들 내 주식의 범위에 국외주식이 포함될 수 있도록 기존의 ‘국내주식등’의 용어를 ‘주식등’으로 일괄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134) 「소득세법」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135)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외전출세 운용 현황]

2018~2024년 귀속 국외전출세 신고 현황							
(명, 백만원)							
전출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신고인원	13	28	11	18	24	26	29
신고세액	6,535	36,506	4,206	32,917	7,879	9,285	14,881

자료: 기획재정부

□ 개정안은 국외주식등에 대해 국외전출세를 도입함으로써 이민등을 통한 역외 조세회피를 추가적으로 방지하고, 국내외 주식 보유자 간 과세형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최근 거주자의 국외주식 보유 확대 수준¹³⁶⁾을 감안할 때 동 제도의 도입 목적 중 하나인 ‘조세피난처’로의 이전 시 역외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고, 미국, 일본 등 주요 국가의 경우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자산에 해외주식을 포괄하여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국외주식등을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과세형평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한편, 국외주식의 경우 국내주식과 달리 국외전출세의 과세대상 요건 중 대주주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일반적인 주식 양도의 경우에도 국외주식에 대해서는 대주주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는 점¹³⁷⁾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136) 민간부문 투자주체의 해외주식투자 잔액은 2023년 말 기준 약 2,810억달러 수준으로 국내 투자자의 총 해외주식투자 잔액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민간부문의 해외주식투자는 2020년을 기점으로 빠른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해당 부문 투자주체의 해외주식투자 잔액은 2019년 말 이후 공공부문 대비 높은 수준인 연평균 약 19%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공공부문 주도의 해외주식투자 증가세가 빠르게 진행되었던 이전 시점 대비 최근 민간부문 주도의 해외주식투자 확대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 특성 및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2024.10.31.

137) 「소득세법」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동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외국인재의 유입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음. 개정안은 한국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에 대해 국외전출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국내에서 장기 프로젝트 등을 수행 후 본국으로 귀국하는 인력에게 예상치 못한 세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기존 우수 외국인 근로자 유입 장려 정책과 상반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음.¹³⁸⁾

한편, 개정안에 따라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출국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외국주식에 대한 국외전출세 과세 가능성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현재 국적과 무관히 거주자의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¹³⁹⁾ 등을 통

제118조의7(국외자산 양도소득 기본공제) ①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138) 한편, 국내에서 5년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본국으로 복귀할 경우, 외국인 보유한 본국 주식은 국외전출세 과세 징수 대상이 됨. 그러나 본국 입장에서는 본국 주식은 자국 주식으로 외국인 이를 실제로 처분할 때 본국에서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하게 되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현재 거주지가 아닌 우리나라에 외국납부세액 경정청구 등을 활용하여 납부한 국외전출세를 환급받을 필요성이 있음. 이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거주지가 아닌 지역에서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함을 요구하므로, 외국인 유입 저해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것으로 보임.

13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외금융회사등”이란 국외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포함하고,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
 - 가. 금융 및 보험업과 이와 유사한 업종을 하는 금융회사
 - 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
2.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 및 가상자산거래(「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라목의 가상자산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포함한다)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계좌를 말한다.
 - 가. 「은행법」 제27조에 따른 은행업무와 관련하여 개설한 계좌
 -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증권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의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 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자산의 거래를 위

해 외국금융회사에 보유 중인 외국주식에 대해서는 과세가 가능한 상황임. 그러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동 신고제도를 활용할 수 없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국외주식에 대한 외국인의 출국으로 인한 국외전출세 과세 시의 금액 요건 등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추가적으로,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여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을 금액 기준으로 한정하는 경우 그 내용은 법률상에 직접 규정하여 법률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음. 현행법 또한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만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¹⁴⁰⁾ 금액을 기준으로 한 국외전출세의 과세 대상이 시행령에 규정될 경우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보임.

-
- 하여 국외에 있는 같은 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사업자에 개설한 계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계좌 외의 계좌로서 그 밖에 금융거래 또는 가상자산거래를 위하여
 해외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
 3. “해외금융계좌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나.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다. 제53조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제53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①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에서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해외금융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이하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해외금융계좌정보를 다음 연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라 한다)는 해당 해외금융계좌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1. 해외금융계좌 중 실지명의로 의하지 아니한 계좌 등 그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2. 해외금융계좌가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각 공동명의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 판정기준,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신고방법 및 실질적 소유자의 판단기준 등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③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140) 「소득세법」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둘째, 국외전출세를 규정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은 국외주식등에 대해서도 대주주 요건 및 이에 준하는 요건을 적용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독일의 경우 법인의 자본을 직·간접적으로 1% 이상 보유한 자에 대해서만 국외전출세를 도입하였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¹⁴¹⁾¹⁴²⁾

□ 셋째, 국외주식에 대한 대주주 요건 미적용으로 과세대상이 확대되는 경우 이에 수반되는 시스템 등을 갖출 필요가 있음. 상기된 바와 같이 거주자의 국외주식 보유 종목 및 수가 확대되고 있으므로, 이민등으로 국외전출하는 거주자 중 국외전출세 신고인원과 이에 따르는 신고세액은 급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국외전출세의 징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정부는 이에 대해 시행시기를 고려하여 국세청 내 국외전출세 전산시스템 개편, 제도 홍보, 내부직원 교육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입장임.

추가적으로 「소득세법」은 국외전출자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으로의 위임규정을 두고 있으나 관련 시행령은 제정되지 않는 상태임. 법률상에서 규정된 ‘출국’ 및 ‘거주자’에 대한 정의 외에

141) External Tax Relations Act 1

Section 6 - Taxation of capital appreciation

(1) In the case of an individual who was subject to unlimited tax liability under section 1 (1) of the Income Tax Act for a total of at least ten years and whose unlimited tax liability terminates as a result of giving up his or her residence or habitual abode, section 17 of the Income Tax Act is applicable to shares as described in section 17 (1).

제17조 자본회사의 지분양도 (1) 양도인이 지난 5년 이내에 회사 자본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적어도 1% 이상 보유한 경우, 자본회사의 지분양도를 통한 이익도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자본회사 지분을 자본회사에 은닉출자하는 것은 지분양도와 동일하다. 자본회사의 지분은 주식, 유한책임회사의 지분, 참가증권 또는 유사한 지분 및 지분에 대한 기대권이다. 양도인이 양도지분을 양도 이전 5년 이내에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제1문이 적용된다. 이 때, 지분이 연이어 무상으로 취득된 경우 양도인이 본인이 아니어도 전권리자 또는 전권리자 중 하나가 제1문의 지난 5년 이내에 지분을 보유했어야 한다.

142) 일본의 경우, 국외전출을 하는 거주자로서 국외전출 시 소유 등을 하고 있는 대상자산의 가액(시가)의 합계가 1억엔 이상인 경우에 국외전출세의 납세의무자로서 해당함. “소득세법상 국외전출세(Exit Tax) 도입에 관한 연구, -일본의 국외전출과세제도와 비교-”, 윤현석, 한국국제조세학회 조세학술논문집

추가적인 범위 규정이 불필요할 경우,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
또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8

17.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 의무신설(정부안)

현 행	개정안
☐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156의6) ○ (제한세율 적용 신청 대상)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 ○ (제출 서류 및 대상) -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 국외투자기구가 실질귀속자인 경우 : 국외투자기구에 투자한 투자자의 국가별 현황 등이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함께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제출의 보완 등) - 원천징수의무자의 신청서의 누락 미비에 대한 보완 요구 허용 - 신청서 등의 미제출로 실질귀속자 파악 불가 시 제한세율 미적용 ○ (경정청구) - 제한세율 미적용자의 경정청구 허용 ○ 제출된 서류의 보관의무 규정 * 원천징수 납부기한(지급일 다음달 10일) 다음날부터 5년 ○ <신 설>	☐ 신청서의 제출 의무 신설 ○ (현행과 같음) ○ 원천징수의무자의 제출 의무 신설 - (제출서류)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받은 신청서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 (제출대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 (제출기한) 해당 국내원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

■ * 정부안 2025. 9. 3. 제출(의안번호 12654)

□ 개정안은 비거주자의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과거에는 소득의 실질귀속자가 아닌 비거주자가 부당하게 조세조약상의 혜택을 받은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본세 및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이에 2011년 세법개정을 통해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신청서등’)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¹⁴³⁾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¹⁴⁴⁾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 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¹⁴⁵⁾

143) 「소득세법」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①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가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및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제156조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4) 「소득세법」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국내원천소득이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그 국외투자기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귀속자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아 이를 그 명세가 포함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와 함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45) 「소득세법」

제156조의6(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 절차 특례)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을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된 신청서등에 누락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또는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지 못하거나 제출된 서류를 통해서는 실질귀속자를 파악할

□ 개정안은 이에 대해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신고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위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신고서를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③ 해당 국내원천소득일이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법령은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신고서의 보관기간을 원천징수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과 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받은 서류 일체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경우 세원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측면이 있음.

특히, 최근 비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수동소득은 증가하고 있으나 원천징수 실효세율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비거주자가 제3국을 이용하여 거래구조를 설계하는 등 조세조약을 이용하여 국내 과세권을 회피한 결과라는 지적이 있음.¹⁴⁶⁾

수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156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1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2022년,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실

[비거주자·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 원천징수 신고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0		2021		2022		2023	
	총지급액	세액	총지급액	세액	총지급액	세액	총지급액	세액
비거주자	15,229	1,751	18,840	2,200	18,561	2,084	12,898	1,502
외국법인	532,965	52,820	693,092	68,728	689,438	68,155	706,395	63,387
합 계	548,194	54,571	711,931	70,929	702,388	70,238	719,290	64,889
실효세율	10.0		10.0		10.0		9.0	

자료: 국세통계 연보

이에 따라 개정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받은 비거주자의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해외로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징수절차를 강화하고 조세조약을 악용하는 사례 등을 방지하며 세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158